

부평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2008. 2. .

부 평 평 구

부 평 씨 앤 에 이 (주)

변경 전 실시협약

부평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동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시설기본계획에 따라 「부평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을 주관청인 부평구청과 사업시행자인 (가칭)부평씨엔에이주식회사는 물입의 실시협약과 같이 합의하고 이에 서명한다.

2007. 4. 21.

부 평 구 (가칭)부 평 씨 엔 에 이 (주)
구 정 장 박 윤 배 (인) 대표이사 윤 문 기 (인)

변경 후 실시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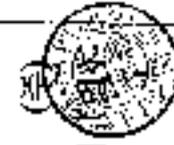
부평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동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시설기본계획에 따라 「부평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을 주관청인 부평구청과 사업시행자인 부평씨엔에이주식회사는 물입의 변경실시협약과 같이 합의하고 이에 서명한다.

2008. 2. 14.



부 평 구 정 장 박 윤 배
부 평 씨 엔 에 이 (주)
대표이사 김 현 제



목 차

목 차

전 문	1	전 문	9
제 1 장 총 칙	1	제 1 장 총 칙	10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1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10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2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12
제 3 조 (용어의 정의)	3	제 3 조 (용어의 정의)	13
제 4 조 (해석)	13	제 4 조 (해석)	30
제 5 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13	제 5 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30
제 2 장 기본약정	14	제 2 장 기본약정	32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4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33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14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33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5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35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16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36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6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36
제 11 조 (협약의 성실 이행)	17	제 11 조 (협약의 성실 이행)	37
제 3 장 총민간투자자의 결정 및 변경	17	제 3 장 총민간투자자의 결정 및 변경	38
제 12 조 (총민간투자비)	17	제 12 조 (총민간투자비)	38
제 13 조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17	제 13 조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38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19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41
제 14 조 (사업시행사의 재원조달)	19	제 14 조 (사업시행사의 재원조달)	41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19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41
제 16 조 (다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19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42
제 5 장 신설에 관한 사항	20	제 5 장 신설에 관한 사항	44
제 17 조 (설계, 공사의 도급)	20	제 17 조 (설계, 공사의 도급)	44
제 18 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21	제 18 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45
제 19 조 (도급·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책임)	21	제 19 조 (도급·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책임)	46
제 20 조 (선계, 인허가 등)	22	제 20 조 (선계(선인허가등))	47
제 21 조 (실시계획의 승인)	22	제 21 조 (실시계획의 승인)	47
제 22 조 (공사기간)	23	제 22 조 (공사기간)	49
제 23 조 (공사의 착수)	24	제 23 조 (공사의 착수)	49
제 24 조 (공정관리)	24	제 24 조 (공정관리)	51
제 25 조 (위험물 및 지상물의 발견)	25	제 25 조 (위험물 및 지상물의 발견)	52
제 26 조 (문화재)	26	제 26 조 (문화재)	53
제 27 조 (사업이행보증)	26	제 27 조 (사업이행보증)	54
제 28 조 (시체상금)	27	제 28 조 (시체상금)	56
제 29 조 (보험가입)	28	제 29 조 (보험가입)	57
제 30 조 (업무감독 및 감사)	28	제 30 조 (업무감독 및 감사)	58
제 31 조 (기성김사)	29	제 31 조 (기성김사)	59

제 32 조 (민원처리)	29	제 32 조 (민원처리)	59
제 33 조 (환경 및 안전관리)	30	제 33 조 (환경 및 안전관리)	61
제 34 조 (공사책임감리)	30	제 34 조 (공사책임감리)	62
제 35 조 (부속시설)	31	제 35 조 (부속시설)	63
제 36 조 (준공전 사용인가)	32	제 36 조 (준공전 사용인가)	64
제 37 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32	제 37 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65
제 38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목)	33	제 38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목)	65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4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8
제 39 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34	제 39 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68
제 40 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34	제 40 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68
제 41 조 (운영비의 결정 등)	35	제 41 조 (운영비의 결정 등)	69
제 42 조 (운영비의 변경)	36	제 42 조 (운영비의 변경)	70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36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72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	37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무관청 계약)	73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38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75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38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76
제 47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운영)	39	제 47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운영)	78
제 48 조 (성미한 사업)	41	제 48 조 (성미한 사업)	80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41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81
제 49 조 (성과의 측정·보고)	41	제 49 조 (성과의 측정·보고)	81

변경권 행사절차

변경 후 실시절차

제 50 조 (성파의 전경)	42	제 50 조 (성파의 설치)	82
제 51 조 (성파의 평기)	43	제 51 조 (성파의 평기)	84
제 52 조 (성파평가위원회의 구성)	44	제 52 조 (성파평가위원회의 구성)	85
제 53 조 (성파평가위원회의 운영)	44	제 53 조 (성파평가위원회의 운영)	86
제 54 조 (성파평가 원제에 대한 조치)	45	제 54 조 (성파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87
제 8 장 성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46	제 8 장 성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89
제 55 조 (사업수익률의 산정)	46	제 55 조 (사업수익률의 산정)	89
제 56 조 (사업수익률의 조정)	47	제 56 조 (사업수익률의 조정)	90
제 57 조 (임대료의 산정)	47	제 57 조 (임대료의 산정)	91
제 58 조 (임대료의 조정)	48	제 58 조 (임대료의 조정)	92
제 59 조 (운영비의 산정)	48	제 59 조 (운영비의 산정)	93
제 60 조 (운영비의 조정)	48	제 60 조 (운영비의 조정)	93
제 61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49	제 61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94
제 62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50	제 62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95
제 9 장 주주관청의 시원에 관한 사항	50	제 9 장 주주관청의 시원에 관한 사항	96
제 63 조 (보상업무 등)	50	제 63 조 (보상업무 등)	96
제 64 조 (주주관청의 비제정지 시원)	50	제 64 조 (주주관청의 비제정지 시원)	97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51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98
제 65 조 (위험분담의 원칙)	51	제 65 조 (위험분담의 원칙)	98

제 66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52	제 66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99
제 67 조 (우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53	제 67 조 (우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102
제 68 조 (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	54	제 68 조 (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	105
제 69 조 (불가항력사유외 동시 및 대체 힘의)	55	제 69 조 (불가항력사유외 동시 및 대체 힘의)	107
제 11 장 협약의 종료	57	제 11 장 협약의 종료	109
제 70 조 (기간만으로 인한 협약의 종료)	57	제 70 조 (기간만으로 인한 협약의 종료)	109
제 71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59	제 71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111
제 72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61	제 72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115
제 73 조 (해시시지급금 및 배수가의 산정)	62	제 73 조 (해시시지급금 및 배수가의 결정)	116
제 74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63	제 74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118
제 75 조 (기간만으로 또는 해시에 따른 원래수정 ^{해지})	64	제 75 조 (기간만으로 또는 해지 ^{해지} 에 따른 일반규정)	120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제출금	64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제출금	121
제 76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64	제 76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121
제 77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65	제 77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121
제 78 조 (출자사 및 출자사본의 변경)	65	제 78 조 (출자사 및 출자사본의 변경)	123
제 79 조 (자금제출금의 절차)	66	제 79 조 (자금제출금의 절차)	124
제 80 조 (자금제출금에 따른 이의의 공유)	67	제 80 조 (자금제출금에 따른 이의의 공유)	126
제 13 장 분쟁의 해결	68	제 13 장 분쟁의 해결	127
제 81 조 (분쟁의 해결)	68	제 81 조 (분쟁의 해결)	127

부속 14 조 (총계)

부속 14 조 (총계)

제 14 조 (총계)	68	제 82 조 (총계)	128
제 14 장 기타 사항	69	제 14 장 기타 사항	129
제 83 조 (협약의 변경)	69	제 83 조 (협약의 변경)	129
제 84 조 (협약의 수익지)	70	제 84 조 (협약의 수익지)	130
제 85 조 (주무관청의 협의준수 의무)	70	제 85 조 (주무관청의 협의준수 의무)	130
제 86 조 (익부부효)	70	제 86 조 (익부부효)	131
제 87 조 (복사적 조건의 배제)	70	제 87 조 (복사적 조건의 배제)	131
제 88 조 (비필유지)	70	제 88 조 (비필유지)	132
제 89 조 (불지)	71	제 89 조 (불지)	133
제 90 조 (임의)	72	제 90 조 (임의)	134
제 91 조 (준거법)	72	제 91 조 (준거법)	135
제 92 조 (협약의 효력)	72	제 92 조 (협약의 효력)	135
별표1(공 시역의 개요)	74	별표1(공 시역의 개요)	136
별표2(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75	별표2(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138
별표3(총민간투자비)	76	별표3(총민간투자비)	139
별표4(야경투자금 투입일정)	77	별표4(야경투자금 투입일정)	140
별표5(보행가입계획)	78	별표5(보행가입계획)	141
별표6(무속시설)	79	별표6(무속시설)	143
별표7(무속시설의 운영순이익)	80	별표7(무속시설의 운영순이익)	144
별표8(임대료 운영방법 및 지급일정)	81	별표8(임대료 운영방법 및 지급일정)	146

변경 전 실시법령

별표9(운영비의 구성) 82
 별표10(관리운영권의 산계) 83
 별표11(해지시지급금) 87
 별표12(총담금 적립일정) 88
 별표13(재무모델) 89
 부록1(성과.요.구수준서) 90
 부록2(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 244
 부록3(성과평가에 따른 징부지급금 차등사규 요령) 248



변경 후 실시법령

별표9(운영비의 구성) 148
 별표10(관리운영권의 인계) 150
 별표11(해지시지급금) 158
 별표12(총담금 적립일정) 160
 별표13(세무모델) 162
 [별책]부.록1(성과.요.구수준서) 2
 [별책]부.록2(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 248
 [별책]부.록3
 (성과평가에 따른 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 254

2013. 12. 23.



부평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

부평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실시협약

부평구와 (가칭)부평씨엔에이투자회사는 2007년 4월 24일 부평구와 부평씨엔에이투자회사는 2008년 2월 21일 본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전 문

전 문

인천광역시부평구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부인전광역시부평구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부평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부평문화예술회관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부평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부평문화예술회관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한다.

주무관청은 이러한 취시 하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부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의 부평문화예술회관(주무관청이 임차인으로서 하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과 이로 인한 채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이를 위한 채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평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기부계획(이하 "지선"이라 한다)을 2005년 12월 2일 수립·고시하고 사업기부계획"이라 한다)을 2005년 12월 2일 수립·고시하고

주무관청은 이러한 취시 하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부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의 부평문화예술회관(주무관청이 임차인으로서 하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과 이로 인한 채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평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기부계획(이하 "지선"이라 한다)을 2005년 12월 2일 수립·고시하고

합성자산관리법안

였으며,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2007년 3월 8일 (기침)무
 쟁서엔에이투자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본 사업
 의 (우선)임선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사의
 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법정후생사업안

였으며,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2006년 3월 8일 (기침)무
 쟁서엔에이투자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본 사업
 의 (우선)취산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2007년
 4월 2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실시협약에서 정한 본 사업시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은 주무관청이 이행하기로 함에 따라 2008년 2월 1/일 본
 민경실시협안을 체결한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실사의 성공성을 꾀어 인식하
 고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정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
 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부제화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할
 데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
 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부제화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할
 데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변경 또는 실시권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규모는 별표1(본 사업의 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③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추진 단계별로 협약당사자간에
본 협약에서 정한 계약과 업무로 이루어진다.

변경 또는 실시권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규모는 별표1(본 사업의 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③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추진 단계별로 협약당사자간에
본 협약에서 정한 계약과 업무로 이루어진다.

시역스케치

1. 조사 및 설계의 수행
2. 지입차량 등 계획도면
3. 풍사피수 및 공진파라
4. 시설투자의 완료
5. 시설의 기공제안
6. 시설의 임대계약
7. 국세관리 등 운영
8. 계약의 이행 및 보고
9. 지침규 상한 및 배당
10. 관료운영권 대상시설
위치

주요시설

1. 위험기능 협의지위
2. 부 시역부지 제공, 시설계획의 승인
3. 업무감도 및 기성검사
4. 준공검사 및 준공수속인
5. 관리운영권의 설정
6. 시설의 임대계약
7. 시설의 사용
8. 실라의 위치 및 설계
9.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10. 관리운영권 대상시설 인수

상업시행과

1. 조사 및 설계의 수행
2. 차입차량 등 계획도면
3. 풍사피수 및 공진파라
4. 시설투자의 완료
5. 시설의 임대계약
6. 국세관리 등 운영
7. 계약의 이행 및 보고
8. 지침규 상한 및 배당
9. 관료운영권 대상시설
10. 위치

주요관청

1. 인허가 등 행정지원
2. 본 사업부지 제공, 실시계획의 승인
3. 업무감도 및 기성검사
4. 준공검사 및 준공수속인
5. 시설의 임대계약
6. 시설의 위치계시
7. 국세관리 등 운영
8.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9. 관리운영권 대상시설
10. 위치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1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2호에 정한 방식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2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본 사업시설의 이용 및 기능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주 관장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표G(부속시설)을 부속사업으로 하여 추진한다.

② 삭제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시범시행자가 투자할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상·지표되는 임대료와 부속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으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로 상당한다.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상·지표되는 임대료로 회수된다.

부속시설을 제외한 본 사업시설의 최종 이용자의 이용 대가는 주주 관장에게 귀속되며, 본 시설이 이용에 나설 때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이에 관계 없이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주주 관장에게 있다.

본 사업시설의 최종 이용자의 이용 대가는 주주 관장에게 귀속되며, 본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이에 관계 없이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주주 관장에게 있다.

변경 전 실시협약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산률"이라 함은 사업수익률 중에서 시표규리를 초과하는 제반 위험(Risk)을 감안한 위험보상률(Risk Premium)을 말하며, 본 협약상 가산률은 1.2% 이하 사업기간 중 변경되지 아니한다.

"건설기간"이라 함은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은 내한민국 법률 제7305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건설이자"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건설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협약에서

변경 후 실시협약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산률"이라 함은 사업수익률 중에서 시표규리를 초과하는 제반 위험(Risk)을 감안한 위험보상률(Risk Premium)을 말하며, 본 협약상 가산률은 1.2% 이하 사업기간 중 변경되지 아니한다.

"건설기간"이라 함은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은 내한민국 법률 제7305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건설이자"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건설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협약에서

변경 전 실시협약

정한 이자비용을 말한다.

"공사관리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6호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근거한 건설사업관리를 임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건설사업관리자(CM)]로서 책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제인을 포함한다.

"공사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기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공사 수혜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공사비"라 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말한다.

"공사착수일"이란 함은 본 협약 제23조(공사의 착수)

변경 후 실시협약

정한 이자비용을 말한다.

"공사관리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6호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근거한 건설사업관리를 임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건설사업관리자(CM)]로서 책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제인을 포함한다.

"공사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기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공사 수혜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공사비"라 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말한다.

"공사착수일"이라 함은 본 협약 제23조(공사의 착수)

변경 전 실시협약

에 따라 제출된 확장계에 공사착수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관계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유지, 관리, 운영, 무상사용수익하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를 부담신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본 사업시설에 대한 규음 확인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정 받은 본 사업에 대한 사회기반시설관리유형권을 말한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변경 후 실시협약

에 따라 제출된 확장계에 공사착수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관계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성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리유형권~~을~~ 본 사업시설에 대한 규음 확인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정 받은 본 사업에 대한 사회기반시설관리유형권을 말한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변경 전 실시법

"기본제무모델"이라 함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제무모델을 말한다.

"기준이자율"이라 함은 그 산정 시점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제하위 등급의 3년 만기인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순차로 적용하며, 3년 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을 초과하는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로 대체한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본 협약 제13장(분쟁의 해결)에 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기본제무모델"이라 함은 기본제무모델에 자금세조달 중인 신청일 까지 현금흐름 실시 및 미래예측분기금

변경 후 실시법

"기본제무모델"이라 함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제무모델을 말한다.

"기준이자율"이라 함은 그 산정 시점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 등급의 3년 만기인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순차로 적용하며, 3년 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을 초과하는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로 대체한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본 협약 제13장(분쟁의 해결)에 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기본제무모델"이라 함은 기본제무모델에 자금세조달 중인 신청일 까지 현금흐름 실시 및 미래예측분기금

변경 전 실시법의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
모형을 말한다.

"담보권"이라 함은 서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동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적, 경제
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내리은행"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대체사업자"라 함은 본 협약 제77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본 사업의 대체사업자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매수청구권"이라 함은 본 협약 및 민간투자법 제59
조(매수청구권의 인정)에 따른 본 사업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말한다.

"매수청구인정통지일"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법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따라 행
하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를 인정하는 통
지를 한 날을 말한다.

변경 후 실시법의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
모형을 말한다.

"담보권"이라 함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동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적, 경제
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내리은행"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대체사업자"라 함은 본 협약 제77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본 사업의 대체사업자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매수청구권"이라 함은 본 협약 및 민간투자법 제59
조(매수청구권의 인정)에 따른 본 사업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말한다.

"매수청구인정통지일"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법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따라 행
하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를 인정하는 통
지를 한 날을 말한다.

"문화재"의 실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모든 역사, 고대유물, 구조물 및 기타 잔재를 말한다.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내한민간 법률 제767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정우를 포함한다.

"민간투자법시행령"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 1887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이하 "민간투자법시행령"이라 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정우를 포함한다.

"민간투자법령"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을 의미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의한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한다. 관

"문화재"의 실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모든 역사, 고대유물, 구조물 및 기타 잔재를 말한다.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67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정우를 포함한다.

"민간투자법시행령"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 1887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이하 "민간투자법시행령"이라 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정우를 포함한다.

"민간투자법령"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을 의미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의한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한다. 관

변경 전 실시법안

협약에서는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5호 12호(2005.04)이며, 그 수정과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본 사업"이라 함은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부평구 부평문화예술회관의 신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을 말한다.

"부속사업"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른 부평문화예술회관 시설사업으로서 본 시설 및 부속시설을 완공하여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리우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본 사업부지"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신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평문화예술회관시설로서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본 협약"이라 함은 본 사업의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변경 후 실시법안

협약에서는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5호 12호(2005.04)이며, 그 수정과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본 사업"이라 함은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부평구 부평문화예술회관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을 말한다.

"본 사업부지"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평문화예술회관시설로서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본 협약"이라 함은 본 사업의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변경 전 실시법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본 협약 당사자” 또는 “협약당사자”라 함은 본 사업의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부분준공”이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본 사업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기 하는 시설로서 남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분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협약당사자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의무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변경 후 실시법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본 협약 당사자” 또는 “협약당사자”라 함은 본 사업의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부분준공”이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본 사업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기 하는 시설로서 남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분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협약당사자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의무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변경 전 실시역역

아니하는 사유로서, 취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하며,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비교제부모델"이라 함은 기준제부모델에 자금제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제부모델을 말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또는 BTL 방식)"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효용권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사회적 반사실권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또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사업계획서"라 함은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

변경 후 실시역역

아니하는 사유로서, 취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하며,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비교제부모델"이라 함은 기준제부모델에 자금제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제부모델을 말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또는 BTL 방식)"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효용권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사회적 반사실권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또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사업계획서"라 함은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

변경 전 설립사업약

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제반 서류를 말한다.

“사업기간”이라 함은 본 회가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구분된다.

“사업년도”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 종료 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사업실행자”라 함은 본 협약의 당사자인 (가장)부평세인케이주식회사(선업예정법인)를 포함하며 살포는 인정될 수 있음)를 의미하며, 그 직접한 승계인을 말한다.

“성과평가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사실사업기부계획 및 본 협약 제52조(성과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변경 후 설립사업약

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제반 서류를 말한다.

“사업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구분된다.

“사업년도”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인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 종료 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사업실행자”라 함은 본 협약의 당사자인 부평세인에이주식회사(실호는 변경될 수 있음)를 의미하며, 그 직접한 승계인을 말한다.

상세

변경 전 실시협약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 통계월보에 표시되는 지수로써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원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이라 함은 2005년 12월 2일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운영비의 계산기준이 되는 상월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한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 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변경 후 실시협약

"소비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 통계월보에 표시되는 지수로써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원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이라 함은 변경실시점안계실 일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일반관리비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한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상월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영인일

"시공제"라 함은 사업시행사로부터 본 사업의 신원공사를 독립만이 공사를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수취기본계획"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2005년 12월 2일 고시한 부령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부령규 고시 제2005-48호)를 말하며, 이와 관련된 공적사정 및 권의담변서를 포함한다.

"설시계획"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법 제15조(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하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설시계획의 승인)의 정무시행 및 관련 조(그 수정 및 담변)를 말한다.

"설시실제"라 함은 사업시행사가 본 사업계획의 진실을 위해 직할하여 실시계획과 함께 제출하여 주무관청인 부령구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관련 건축, 도목, 조경, 전기, 기계 등의 설계로서 설계시공이 필요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영인일"이라 함은 도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

영인일

"시공제"라 함은 사업시행사로부터 본 사업의 신원공사를 독립만이 공사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수취기본계획"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2005년 12월 2일 고시한 부령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부령규 고시 제2005-48호)를 말하며, 이와 관련된 공적사정 및 권의담변서를 포함한다.

"설시계획"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법 제15조(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하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설시계획의 승인)의 정무시행 및 관련 조(그 수정 및 담변)를 말한다.

"설시실제"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계획의 진실을 위해 직할하여 실시계획과 함께 제출하여 주무관청인 부령구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관련 건축, 도목, 조경, 전기, 기계 등의 설계로서 설계시공이 필요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영인일"이라 함은 도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

행정절차법

<p>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위를 하는 날을 말한다.</p> <p>"일(日)" 또는 "날"이라 함은 0시에 시작하는 24시간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p> <p>"경(靑)"라 함은 개인, 회사, 합작회사, 공동투자회사, 법인, 조위, 신부, 비법인단체 또는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p> <p>"운영비"라 함은 관리운영권 실행기간 동안 본 법의 제 4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부속시설 제외)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비용으로서 인건비, 유스관리비, 운영간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p> <p>"위험률"이라 함은 폭발물, 유독화학물질, 각종 제기할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손해 또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p> <p>"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그 이속적의 원인과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p>	<p>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입을 하는 날을 말한다.</p> <p>"일(日)" 또는 "날"이라 함은 0시에 시작하는 24시간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p> <p>"자(者)"라 함은 개인, 회사, 합작회사, 공동투자회사, 법인, 조위, 신부, 비법인단체 또는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p>
<p>관리운영권 실행기간 동안 본 법의 제 4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부속시설 제외)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비용으로서 인건비, 유스관리비, 운영간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p> <p>"위험률"이라 함은 폭발물, 유독화학물질, 각종 제기할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손해 또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p> <p>"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그 이속적의 원인과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p>	<p>관리운영권 실행기간 동안 본 법의 제 4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부속시설 제외)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비용으로서 인건비, 유스관리비, 운영간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p> <p>"위험률"이라 함은 폭발물, 유독화학물질, 각종 제기할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손해 또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p> <p>"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그 이속적의 원인과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p>

변경 전 설계면역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
 을 말한다.

“인허가”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주부
 청, 정부, 관계기관 또는 기타 제반 공금시설을 운영
 하는 자가 행하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동의, 승인,
 승낙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임대료” 또는 “시설임대료”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
 로부터 총민간투자비에 본 사업의 수익률을 적용하
 여 원리금반등분할 방식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
 의 임대 계약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라 함은 공공자금
 계약 남자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사가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 변경(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률(ROF)을 극
 대화하려는 행위로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
 한 것을 말한다.

변경 후 설계면역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
 을 말한다.

“인허가”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주부
 청, 정부, 관계기관 또는 기타 제반 공금시설을 운영
 하는 자가 행하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동의, 승인,
 승낙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임대료” 또는 “시설임대료”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
 로부터 총민간투자비에 본 사업의 수익률을 적용하
 여 원리금반등분할 방식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
 의 임대 계약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라 함은 공공 자금
 계약 남자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사가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 변경(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률(ROF)을 극
 대화하려는 행위로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
 한 것을 말한다.

변경 전 실시령의

"자금자임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대출약정 및 계약 등을 말하며, 다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위대보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에서 부속시설 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주무관청"이라 함은 부평구 혹은 민간투자법 제1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2호에 의한 본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평구청장을 말한다.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 따른 업무 또는 권한을 다른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는 수여 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으로 보며, 또는 그 직범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자도 포함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기 전까지는 부평구청장이 주무관청을 대표한다.

변경 후 실시령의

"자금자임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대출약정 및 계약 등을 말하며, 다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위대보와 사업시행자의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주무관청"이라 함은 부평구 측은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2호에 의한 본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평구청장을 말한다.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 따른 업무 또는 권한을 다른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는 수여 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으로 보며, 또는 그 직범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자도 포함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기 전까지는 부평구청장이 주무관청을 대표한다.

변경 전 실시법

"준공"이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병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라 공사착수일이 연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정된다.

"준공일"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38조(준공 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사정일**인정된 날을 말한다.

"지방계약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67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도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물"이라 함은 본 사업부지 내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임목, 축목 및 농산물, 그 밖의 물건

변경 후 실시법

"준공"이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병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라 공사착수일이 연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정된다.

"준공일"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38조(준공 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사정일**인정된 날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계약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767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물"이라 함은 본 사업부지 내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임목, 축목 및 농산물, 그 밖의 물건

변경 전 실시령안

중에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적기 필요하지 아니한 불건을 말한다.

"착공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계상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이외의 자금을 포함한다.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투자비 중에서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총투자비"라 함은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이 반영된 건설 총사업비와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출자자"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사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본 협약 제78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라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변경 후 실시령안

중에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적절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착공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계상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이외의 자금을 포함한다.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투자비 중에서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총투자비"라 함은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이 반영된 건설 총사업비와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출자자"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본 협약 제78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라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변경 전 실시법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출자에상자"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해지시 지급금"라 함은 본 협약 제72조(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와 제73조(해지시지급금 및 배수가의 결정)에 따라 본 협약의 종료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 4 조 (해석)

① 본 협약에 있어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법률, 조약, 법령, 조례, 규칙 등(이하 총칭하여 "법령"이라 한다)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본 협약 체결 후 개정 또는 다른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본 협약상 특수 형태의 언급에는 특수 형태의 언급이 ②

변경 후 실시법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출자에상자"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해지시 지급금"라 함은 본 협약 제72조(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와 제73조(해지시지급금 및 배수가의 결정)에 따라 본 협약의 종료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 1 조 (해석)

① 본 협약에 있어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법률, 조약, 법령, 조례, 규칙 등(이하 총칭하여 "법령"이라 한다)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본 협약 체결 후 개정 또는 다른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 전 실시법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본 협약은 해석할 때 표제는 무시된다.

④ 본 협약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⑤ 사임시행자, 시공사, 공사감리자, 채권금융기관, 주무관청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⑥ 본 협약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부성이 그 권한을 하부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 5 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① 본 협약과 그에 언급된 별첨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이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변경 후 실시법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본 협약을 해석할 때 표제는 무시된다.

④ 본 협약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⑤ 사임시행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채권금융기관, 주무관청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⑥ 본 협약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부성이 그 권한을 하부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 5 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① 본 협약과 그에 언급된 별첨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이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변경 전 실시법

②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시설사업기본계획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③ 본 협약에 의하여 성과요구수준을 설정, 평가하는데 있어서 승인된 실시계획은 부록I(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보다 우선한다.

제 2 장 기본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

변경 후 실시법

②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시설사업기본계획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③ 본 협약에 의하여 성과요구수준을 설정, 평가하는데 있어서 승인된 실시계획은 부록I(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보다 우선한다.

제 2 장 기본의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

변경 전 실시법

기본계획,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가칭)부평세앤에이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는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수전하여 제출(2007년 4월 9일 제출)한 법인선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선임하고 그 결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신설

변경 후 실시법

기본계획,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부평세앤에이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신설

변경 전 실시협약

2. 본 사업부지 내의 국·공유 재산을 신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 사용, 수익

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

5. 주무관청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의 청구와 수령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변경 후 실시협약

2. 본 사업부지 내의 국·공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삭제

4. 삭제

5. 주무관청에 대한 임대료 및 ~~일반관리비~~의 청구와 수령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변경 전 실시협약

③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본 사업에 대하여 특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된 위험을 부담한다.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실시협약

③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본 사업에 대하여 특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된 위험을 부담한다.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부관청에 귀속된다.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부관청에 귀속된다.

② 본 협약이 종료되지 또는 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되거나
폐수청구에 따라 본 사업이 매수되는 경우에 사업시행
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리계산 포
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1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
른다.

② 본 협약이 종료되지 또는 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되거나
폐수청구에 따라 본 사업이 매수되는 경우에 사업시행
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리계산 포
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1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
른다.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변경 전 실시법

② 제1항의 기간은 본 사업시행 전제가 준공된 이후 민간 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와 본 협약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하고 인대가 개시되는 날부터 기산하며, 이는 준공일 익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36조(준공신 사용인가)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부분준공 승인 후 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해당시설의 인대가 개시되는 날부터 기산하며, 이는 해당 시설의 준공일 익일로 한다.

제 11 조 (협약의 성실 이행)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명령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사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변경 후 실시법

② 제1항의 기간은 본 사업시설 전체가 준공된 이후 민간 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와 본 협약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하고 인대가 개시되는 날부터 기산하며, 이는 준공일 익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36조(준공신 사용인가)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부분준공 승인 후 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해당시설의 인대가 개시되는 날부터 기산하며, 이는 해당 시설의 준공일 익일로 한다.

제 11 조 (협약의 성실 이행)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명령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사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민간투자비)

본 사업의 총민간투자비는 금39,268백만원(백만원 미만 금액은 반올림 함)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3(총민간투자비)과 같다.

제 13 조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①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총사업비 등의 산정)제3항제1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정된 총민간투자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총민간투자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사가 총민간투자비의 증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2.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민간투자비)

본 사업의 총민간투자비는 금39,268백만원(백만원 미만 금액은 반올림 함)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3(총민간투자비)과 같다.

제 13 조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①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총사업비 등의 산정)제3항제1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정된 총민간투자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총민간투자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사가/총민간투자비의 증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2.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변경 전 실시협약

3.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 민간투자비가 변동하는 경우
4. 법령(민간투자 관련 법령, 조세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② 협약체결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사업시행자와 감리자와의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아 감리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민간투자비를 변경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 주무관청이 본 협약 별표1(본 사업의 개요)에 기재된 본 사업시설의 공사범위 및 내용에 대한 변경(위치 변경 및 설계시공안내서, 설의답변서에 규정된 내용

변경 후 실시협약

3.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 민간투자비가 변동하는 경우
4. 법령(민간투자 관련 법령, 조세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② 협약체결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사업시행자와 감리자와의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아 감리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민간투자비를 변경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 주무관청이 본 협약 별표1(본 사업의 개요)에 기재된 본 사업시설의 공사범위 및 내용에 대한 변경(위치 변경 및 설계시공안내서, 설의답변서에 규정된 내용

변경 후 실시업무

변경 전 업무

<p>이약의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 포함)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사의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p> <p>2. 공사 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시퀀스 (본 사업시설의 기준, 본 사업 관련 업무처리 지침, 표준시방서, 실무 제정 설계 기준 및 지침 포함)의 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p>	<p>이약의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 포함)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사의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p> <p>2. 공사 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시퀀스 (본 사업시설의 기준, 본 사업 관련 업무처리 지침, 표준시방서, 실무 제정 설계 기준 및 지침 포함)의 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p>
<p>제2항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의 필요 여부 및 설계변경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p>	<p>제2항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의 필요 여부 및 설계변경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p>
<p>총민간투자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시 이를 기준으로 한다.</p> <p>제1항제4호, 제3항제2호 사유, 본 협약 제68조(부가항의 사유 및 그 처리)의 사유로 인한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민간투자비 변경 부분에서 제외한다.</p>	<p>총민간투자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시 이를 기준으로 한다.</p> <p>제1항제4호, 제3항제2호 사유, 본 협약 제68조(부가항의 사유 및 그 처리)의 사유로 인한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민간투자비 변경 부분에서 제외한다.</p>

변경 전 실시협약

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민간투자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산출 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민간투자비 중 공공자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살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 4 장 제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제원조달)

본 협약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제원의 조달 및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추진한다.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출자에정

변경 후 실시협약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민간투자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산출 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민간투자비 중 공공자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살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 4 장 제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제원조달)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제원의 조달 및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추진한다.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출자에정

변경 및 취소 범위

자 또는 출자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투자확약서 등 제반 서류의 내용과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 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정해진 자금조달계획에 따 라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차기자분을 직기에 조달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 체결시 강사의 계획공정료를 반영한 자기자본 의 투입일정은 사업시행자는 별표4(약정투자금 투입일 정)와 같다.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동안 제2항의 ~~협약~~일정에 미디 령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하며 유공시점에 총민간 투자비의 10%가 자기자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 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 을 하여야 한다.

변경 및 취소 범위

자 또는 출자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투자확약서 등 제반 서류의 내용과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 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자금조달계획에 따 라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차기자분을 직기에 조달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 체결시 강사의 계획공정료를 반영한 자기자본 의 투입일정은 사업시행자는 별표4(약정투자금 투입일 정)와 같다.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동안 제2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령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하며 유공시점에 총민간 투자비의 10%가 자기자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 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 을 하여야 한다.

② 주주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채권금 ③ 주주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채권금 ④ 주주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채권금
 용격권 등과 본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이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 실을 확인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상기관 등으로부터 타인자본을 조 달하여 별표4(약정투자금 투입양식)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전신자금을 내출 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채권금상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편리한 영권을 복식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자 할 경우 주주관청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주관청에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 약 및 (근)저당신청제약을 포함한 담보의결에 관한 제반 서류들을 제출하고, 주주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본 협 약이 정한 바를 벗어남이 없었는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② 주주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채권금 용격권 등과 본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이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 실을 확인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상기관 등으로부터 타인자본을 조 달하여 별표4(약정투자금 투입양식)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전신자금을 내출 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채권금상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편리한 영권을 복식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주관청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주관청에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 약 및 (근)저당신청제약을 포함한 담보의결에 관한 제반 서류들을 제출하고, 주주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본 협 약이 정한 바를 벗어남이 없었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① 사임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처당관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공사의 도급)

① 사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회사(이하 "설계자"라 한다), 시공회사(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신계약에 따라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중립자료는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임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② 사임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처당관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공사의 도급)

① 사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회사(이하 "설계자"라 한다), 시공회사(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신계약에 따라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중립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임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급계약은 체결한(또는 체결할)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 18 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제17조(실제, 공사의 노급)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하여금 관련 법령의 규정, 실시계획 및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를 위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 실시계획 및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실시계

변경 및 실시업안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급계약은 체결한(또는 체결할)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 18 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제17조(설계, 공사의 도급)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하여금 관련 법령의 규정, 실시계획 및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를 위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 실시계획 및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실시계

변경 전 실시법

회 및 부록1(상과요구수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9 조 (도급·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책임)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채불 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불 노임 등을 지수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 관련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하도급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채불 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 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변경 후 실시법

회 및 부록1(상과요구수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9 조 (도급·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책임)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채불 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불 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 관련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하도급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채불 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 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변경 전 실시협약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시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 20 조 (설계, 인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사실사업기본계획(공지사항, 필의면본서 및 성과요구수준서 포함), 사업계획서,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선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는 본 협약 체결시 실시계획 수행분(이하 "보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②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 각종 인·허가는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 책임과 비용으로 추진하고 주무관청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1 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민간 부사업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의 규정에 의한

변경 후 실시협약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시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 20 조 (설계, 인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사실사업기본계획(공지사항, 필의면본서 및 성과요구수준서 포함), 사업계획서,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선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는 본 협약 체결시 실시계획 수행을 위해 보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②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 각종 인·허가는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 책임과 비용으로 추진하고 주무관청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1 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민간 부사업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의 규정에 의한

변경 전 실시법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계획서 및 본 협약, 사업시행자의 협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해당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

변경 후 실시법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계획서 및 본 협약,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해당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

변경 전 실시업약

시행자가 기조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투자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2 조 (공사기간)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26개월로 한다.

② 본 협약 제13조(총민간투자비의 변경)제1항, 제3항 사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만큼 연기 또는 연장된다.

제 23 조 (공사의 착수)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변경 후 실시업약

시행자가 기조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투자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2 조 (공사기간)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26개월로 한다.

② 본 협약 제13조(총민간투자비의 변경)제1항, 제3항 사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만큼 연기 또는 연장된다.

제 23 조 (공사의 착수)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변경 전 실시법

변경 후 실시법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널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부 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관청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 보상지연, 설계변경 등 공사의 착공을 연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부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착공일을 조정한다.

② 본 협약에 널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부 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청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 보상지연, 설계변경 등 공사의 착공을 연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부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착공일을 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공제율을 공사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공제율을 공사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착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부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성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착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부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사 지성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4 조 (공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양정이 적절히 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월 및 매분기 별로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2월말까지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 공정 및 차기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공사화수율로부터 매분기간의 실제의 공정률이 계획공정률 대비 8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당해 분기말의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 한다.

제 24 조 (공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정이 적절히 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월 및 매분기 별로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2월말까지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 공정 및 차기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공사화수율로부터 매분기말의 실제의 공정률이 계획공정률 대비 8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당해 분기말의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 한다.

⑤ 실시계획에서 정한 동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된 경우 동정계획은 조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에서 정한 동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동정계획은 조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

제 25 조 (위험물 및 저장물의 방진)

제 25 조 (위험물 및 저장물의 방진)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 자립시설의 기둥 및 받침에 손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 중 지상·지하 위험물 및 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상 이상 이상 및 공사 방법 등을 판단하여 방진 시설을 실시할 회 승인 신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 자립시설의 기둥 및 받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상·지하 위험물 및 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상 이상 및 공사 방법을 판단하여 방진 시설을 실시할 회 승인 신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주위의 ~~주변지역~~ ^{주변지역} 또는 ~~주변지역~~ ^{주변지역} 을 더러웠으니 ~~공적계획 승인 신청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저장물이 본 사업부서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조사감리자 및 조무관청에 통지하고 인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주위의 ~~주변지역~~ ^{주변지역} 을 더러웠으니 ~~공적계획 승인 신청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저장물이 본 사업부서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조사감리자 및 조무관청에 통지하고 인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 안해 막생하수는 추가비용 및 공사착공 시거나 공사기간에 관해서는 본 법의 제68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사용료 안해 막생하수는 추가비용 및 공사착공 시거나 공사기간에 관해서는 본 법의 제68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에 따른다.

변경 전 실시령각

④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점물의 세기 또는 중화 및 지정물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협의당사자들은 관련 인허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점물의 세기 및 중화 또는 지정물 이설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부지를 위하여 주부관청 또는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6 조 (문화재)

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물 주부관청 및 관계기관에 통보 하고 이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공사감리사, 주부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문화재 발견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든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하고 문화세가 발견된 위치와 조건대로 문화계를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변경 후 실시령각

④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점물의 세기 또는 중화 및 지정물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협의당사자들은 관련 인허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점물의 세기 및 중화 또는 지정물 이설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주부관청 또는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6 조 (문화재)

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물 주부관청 및 관계기관에 통보 하고 이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공사감리사, 주부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문화재 발견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든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하고 문화제가 발견된 위치와 조건대로 문화계를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변경 전 실시법령

변경 후 실시법령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사의 문화재 발전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7일 이내에 동 문화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사가 취하여야 할 추가조치를 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 시물은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의 감독 및 참여하에 수행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문화재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문화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부분 외에 추가발생비용 및 공사기간의 초리는 본 법령 제10장(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 원칙에 따른다.

⑤ 문화재 시공조사 결과 문화재 발굴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주무관청은 그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발굴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제 27 조 (사업이행보증)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총민간투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발전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7일 이내에 동 문화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추가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 시물은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의 감독 및 참여하에 수행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문화재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문화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부분 외에 추가발생비용 및 공사기간의 초리는 본 법령 제10장(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 원칙에 따른다.

⑤ 문화재 시공조사 결과 문화재 발굴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주무관청은 그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발굴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제 27 조 (사업이행보증)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총민간투자

변경 전 실시협약

비의 10% 이상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일괄보증금)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농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가 또는 설립예정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법인서류 즉시 그 명의의 ~~기관~~ 설립된 사업시행자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해지 되거나 본 사업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무관청이 본 협약을 종료해지 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변경 후 실시협약

비의 10% 이상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일괄보증금)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농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가 또는 설립예정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법인서류 즉시 그 명의의 ~~기관~~ 설립된 사업시행자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해지 되거나 본 사업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무관청이 본 협약을 종료해지 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법률의 개정

변경 또는 신설의

제출된 경우 그 조문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증금 또는 보일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출된 경우 그 조문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증금 또는 보일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업이 영미종류 대상유역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종래의 대상유역에 제정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상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각 세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 이행보증 보증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업이 영미종류 대상유역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종래의 대상유역에 제정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상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각 세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 이행보증 보증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지체상금)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예정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설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0조(지체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착수시, 연기 또는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판명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민간투자비로 본다.

제 28 조 (지체상금)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예정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설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0조(지체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착수시, 연기 또는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판명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민간투자비로 본다.

② 주주관청은 사업시행사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주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주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주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9 조 (보험가입)

(1)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험 가입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험(보험가입계획)과 같이 가입하고 보험가입의 증명서류를 주주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 동안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주관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의 변경 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주주관청에 손해

③ 주주관청은 사업시행사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주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주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주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9 조 (보험가입)

(1)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험 가입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험(보험가입계획)과 같이 가입하고 보험가입의 증명서류를 주주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 동안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주관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명령 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주주

변경 전 실시령약

변경 후 실시령약

가 없도록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등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지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령 시선 및 사용 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청에 손해가 없도록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등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지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령 사실 및 사용 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임부감독 및 검사)

①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담당권을 지정하여 이도 하여금 건설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시공현장에서 직접 임회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 30 조 (임부감독 및 검사)

①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담당권을 지정하여 이도 하여금 건설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시공현장에서 직접 임회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성과수준 등에 대하여 월별로 공사관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성과수준 등에 대하여 월별로 공사관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지 않거나 성과요구수준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

③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지 않거나 성과요구수준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

변경 전 실시법

변경 후 실시법

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제 31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 기성에 따라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감리자에 의해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사에
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 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
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2 조 (민원처리)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제 32 조 (민원처리)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 1. 사업민원 : 본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나 본 사업의 시행
으로 인하여 제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제2호를 제외한 민원

- 1. 사업민원 : 본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나 본 사업의 시행
으로 인하여 제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제2호를 제외한 민원

변경 전 실시법령

2. 시공 및 관리운영면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 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공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되는 민원

변경 후 실시법령

2. 시공면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공사로 인하여 직접 발생되는 민원

② 사업민원은 주부관청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시공 및 관리운영면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공민원에 대한 사전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으로서 주부관청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부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부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민간투자비 중 보상비 항목에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④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

② 사업민원은 주부관청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시공면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공민원에 대한 사전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으로서 주부관청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부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부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민간투자비 중 보상비 항목에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④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

변경 전 실시법

도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배상금 등
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 33 조 (환경 및 안전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1(성피요구수준시)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관
리, 안전관리 및 간접 구상 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군·자치구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
리조치를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
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주무관청이 부록1(성피요구수준
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
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사업시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변경 후 실시법

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배상금 등
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 33 조 (환경 및 안전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1(성피요구수준서)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관
리, 안전관리 및 간접 구상 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군·자치구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
리조치를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
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주무관청이 부록1(성피요구수준
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
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사업시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34 조 (공사책임감리)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적 임체인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감리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으로 한다.

② 공사감리자는 본 사업시설 공시에 ~~대항하여~~ ^{대항하여} 원아의 부속1(설계수준요구서)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감리업무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산리업무의 실시체제,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재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1조(기성취사)에 따른 기성취사, 제37조(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사의 완료)에 따른 예비준공

제 34 조 (공사책임감리)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 업체인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감리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으로 한다.

② 공사감리자는 본 사업시설 공시에 대하여 본 법의 부속1(설계수준요구서)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의 실시체제,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재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1조(기성검사)에 따른 기성검사, 제37조(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사의 완료)에 따른 예비준공

변경 및 실시범위

검사,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른 완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사와 그 하수금인으로 하여금 체임권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 제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합의하여 결성하되 그 추가비용은 종민간투자비 증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제 35 조 (부속시설)

① 본 사업시설 중에서 부속시설로 건설되는 시설의 규모·식제 및 범위는 별표6(부속시설)과 같다.

② 제1항의 부속시설은 실시계획을 기점으로 하여 건설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에 따른 민허가 업무는 사업시행

변경 및 실시범위

검사,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른 완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금인으로 하여금 책임권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합의하여 결정하되 그 추가비용은 종민간투자비 증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제 35 조 (부속시설)

변명 전 실시업약

변경 후 실시업약

자 수권 하에 시행한다.

③ 제1항의 부속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등 투자비는 본 협약 제12조(총민간투자비)의 총민간투자비에 포함되지 산정된다.

제 36 조 (준공전 사용인가)

① 본 협약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규정된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전 사용인가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 협약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주무관청에 준공전 사용인가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본 협약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산정은 설

제 36 조 (준공전 사용인가)

① 본 협약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규정된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전 사용인가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 협약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주무관청에 준공전 사용인가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본 협약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주무관청이

비정산을 원칙으로 협약당시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무담한다.

제 37 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부자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30일 전까지 주
 사감리자가 작성한 사포기법시설 예비준공보고서를 주
 무관청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
 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
 보하며, 사업시행자는 동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
 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
 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8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후 공사감리자가 확

제 37 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부자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30일 전까지 주
 사감리자가 작성한 시회기법시설 예비준공보고서를 주
 무관청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
 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
 보하며, 사업시행자는 동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
 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
 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8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후 공사감리자가 확

변경 전 실시업약

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완공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인정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제22조(준공 확인)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9조(준공확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본 협약상의 건설에 관한 성과요구수준서와 실시계획 승인내용이 충족되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필증을 교부하고, 즉시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④ 제2항의 준공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 및 성능의 확인을 위한 시운전

변경 후 실시업약

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완공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인정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제22조(준공 확인)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9조(준공확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본 협약상의 건설에 관한 성과요구수준서와 실시계획 승인내용이 충족되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필증을 교부하고, 즉시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④ 제2항의 준공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 및 성능의 확인을 위한 시운전

변경 전 실시업약

(성능테스트)를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쉼사의 임의, 현장설명, 사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관리운영권의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인, 성부지급금의 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전과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실시계획 승인서의 실시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려일로부터 30일 이내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완을 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실시업약

(성능테스트)를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쉼사의 임의,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관리운영권의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인, 성부지급금의 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실시계획 승인서의 실시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려일로부터 30일 이내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완을 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39 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제 39 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 따라 직결하계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임대료 및 일반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 40 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제 40 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①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임대차 존속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게 하

①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임대차 존속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게 하

변경 전 실시법

변경 후 실시법

고 주무관청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고 주무관청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1항의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를 위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은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로 한다.

②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1항의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를 위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은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한 본 사업시설을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부록I(성곽요구수준서)에 따른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한 본 사업시설을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이 개시되기 이전에 본 사업시설을 이리한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이 개시되기 이전에 본 사업시설을 이리한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제 41 조 (운영비의 설정 등)

제 41 조 (운영비의 건정 등)

① 제61조(경부지남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주무관

① 삭제

변경 전 실시협약

변경 후 실시협약

성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의 표준비용(2005년 12월 2일 기준 불변운영비)은 금22,871백만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9(운영비의 구성)와 같다.

②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주무관청이 본 시선을 입찰하여 사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하거나 주무관청이 수행하는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등)은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공과금 중 일정액(2005년 12월 2일 분변수 기준 5백만원/월)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부속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등)은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사용량이 계속되도록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그 구분계량 결과에 의하여 분담하고, 구분계측이 불가능한 부분(냉난방 에너지위)의 공공요금은 연면적 비율에 배례하여 분담한다.

제 42 조 (운영비의 변경)

제 42 조 (운영비의 변경)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규정된 금 ① 삭제



변경 전 실시협약

변경 후 실시협약

업비의 5%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며 운영비를 번성할 수 있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관리운영은 설정기간중 사실상기본계획(및)본협약에서 정한 시선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본 시설 고시면허 외 추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시역시정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5. 제13조(총민간투자사의 변경)에 의한 총민간투자비 변경사유에 의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사내에서의 운영비 변경법규를 소내하여 조정하고자 할 때

한 경우에는 본 법규의 변경을 통해 조성이 가능하다.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사가 수행하는 유지관리(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주무관청은 본 지침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2. 본 사업시설의 청소·보안관리
3. 본 사업시설의 환경위생관리
4. 본 사업시설의 이용·차질 대원 근무 제공
5. 본 사업시설의 부속관리 업무
6. 부속시설의 영입 등의 운영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가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운영업무

8. 부록1(실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사항

9. 시설시업기본계획 상의 사업범위 외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추가위탁에 대해 합의를 부문에 대한 세호 내지 제7호의 일부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착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회사(이하 "운영사"라 한다)와 본 사업시선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제신 후 즉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의 체결 및 운영자료를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은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기간을 적용한다.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무관청의 책임)

○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선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주무관청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수행한다.

변경 전 실시협약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따라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본 사업의 수행에 직합후 가격과 능력 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성도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할) 제1항의 출자자분 번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 협약의 출지지 및 출자자분 번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실시협약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행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과 위험(대가위험 포함)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수임자 또는 수탁자를 하여남 권 령 법령 및 부록1(실내요구수준서)에서 제정하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이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관련운영권 시정기간 동안 본 사업과 관련 된 보편을 주무관청(현행법령)과 비유으로 가입,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 라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규정에 의거 부속된 사업시 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④ 삭제

⑤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본 사업시행의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 신축개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발. 주식회사에게 위탁하기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의 기간이 종료한 후 1회(2년 이상)에 한하여 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 과를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계시 60일 전까지 주 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부속1(성남요구수준서) 및 제1항이 기외에 따라 기 사업년도에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리말 사업년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주무 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속1(성남요구수준서)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 는 권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령의 변경 등 합리 식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순 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1) 사업시설자는 부속 1(설계요구수준서) 및 부 열아 제45조(1) 사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에서 정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의 내용은 준수하여야 하며, 본 수의
시설의 운영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부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공보시의 책임이 있으며,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및 운영

(2) 주부원형 또는 권질을 위임받은 자는 부건부자양 및 부양 관리
의 법령에 따라 부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원기 및 운영
능을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기용하여 이로 하여금 관리유
업권 전권기인 동안 건물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3) 주부간청은 부 원역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수
인 본 협약 제8장(정부시설물의 살성 및 수급)에 따라
사업시설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비용 지급하기로 한
다.

(4) 사업시설자는 부 사업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법령에 및 각 관련규역야 하고, 시설안전진단 또는 건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상호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
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위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그 실효를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사입시행사가 제4항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
지 않거나 그 이행이 식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
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사입시행자가 부담하
기로 한다.



⑥ 시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데체(데숙선) 총당금 ⑥ 삭계
(이하 "총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리계좌를 별
도로 개설, 관리하여야 하고, 용 지착에 처해진 금액을
사용할 때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총당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총당금에 적립하여 사용하고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인 만보시 총당금 잔액은 주무관
청에 귀속시켜야 한다.

⑧ 관리운영기간중 총당금 소진에 따른 추가비용 중 주무 ⑧ 삭계
관청이 부담하는 일정금액(2005년도 12월 31일 기본가격)

기준 81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 47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 운영)

제 47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 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책임상제

과 비용으로 부속시설을 유지관리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의 운영수입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속시설을 유지관리 ·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수입을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시스템에 의한 부속시설의 관리 · 운영에 따른 계획의 미흡, 수입내역의 불명확 등으로 운영실적을 다음 원의 10월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실적이 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을 확

④ 주무관청은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제3항의 운영

신적이 정확하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확인 권고 사업시행자가 보
여 사인 시험지는 이에 참조하여야 한다.

⑧ 우수관장은 제1항의 조사·확인 권고 사업시행자가 보
고한 운영실적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본 회칙
제8조(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의 성과평가위원회의 하
려금 부족시신의 실제 운영실적을 제1항의 조사·확인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조사하게 하여 부족시실의 신
계 운영실적의을 확정한다.

⑨ 제5항의 제조사본 한 건씩, 제2항의 운영실적에서의 순
이익(A)이 별표7(부속시실의 운영실적)에 표시된 추경
운영실적(C)보다 다음에도 분구하고(단순누방 또는 오
기 방 제외),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실
적에서의 운영실적(B)이 별표7(부속시실의 운영실적
액)에 표시된 추경 운영실적(C)보다 시거나 이외 같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제8항에 불구하고(A-C)에 해당되
는 순이익을 추납판형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⑩ 반리운영권 인정기신 중 부족시실의 실제 운영실적이
별표7(부속시실의 운영실적)에 표시된 추경 운영실적
위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수익이 별표7(부속시설의 운영수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비율(50:50)로 분배하여 수익한다.

제 48 조 (경미한 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민간투자사업 협의의 선점)제4항 단서의 규정제 따라 본 법약 체결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 방법 등에 관한 계획서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본 조 제1항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의 사항은 제47조(부속시설의 유지관리·운영)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 48 조 (경미한 사업)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 49 조 (성과의 측정·보고)

제 49 조 (성과의 측정·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1(성과요구수준차) 및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에 일각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1. 사업시행사는 원보고서를 당해 원의 익월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사는 분기보고서를 당해 분기 익월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의 측정에 대한 제언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세칙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결과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였다는 사유는 인해 성과측정의 기피로부터 사업시행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 50 조 (성과의 집결)

(1) 주주권장은 본 법안 제49조(선거의 촉경·보고)에 달고, 사각 고시할 '내'로 메일 본 사업시절의 성과유를 확인하 고, 성과수준의 부하(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는 성 과요구수준에 도달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사업시행자 에게 촉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사업시 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주판정이 승인한 날 이내에 시 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주주권장은 본 법안 제49조(선거의 촉경·보고)와 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매 분기마다 직선 분기의 성과이행상 황을 점검하고, 본 법안에 규정된 성과요구수준을 충족 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3) 주주권장은 제1항의 성과수준 확인과 제2항의 성과이행 상황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순회, 업무감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 50 조 (성과의 집결)

사각



(4) 제2항의 성과이행심화 점검을 위해 주무관청은 다음 각 조항 행의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선원장치 등 측정기기에 의한 측량
2. 샘플의 추출에 의한 검사
3. 시설의 현상에 대한 분시 검사
4. 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불만족 접수 
5. 고객 만족도 조사



(5)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52조(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의 성과이행상황 점검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6)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성과이행상황 점검 등의 이유로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은 성

파견업이 전행되는 기간 동안 임대료 및 운영비를 정상
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㉞ 본소와 관련하에 발생되는 비용은 주주관청이 부담하며,
사업시행자는 성과의행상황 점검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
나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재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러한 세감절에 이의가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51 조 (성과의 평가)

제 51 조 (성과의 평가)

㉞ 주주권청은 자신의 책임의 비용으로 본 법안 제52조(성
과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편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부록1(성과요구수준
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㉞ 성과평가위원회는 본 법안 제49조(성과의 측정·보고)
및 제50조(성과의 점검)에 따른 성과의 측정·보고 및
주주 결과론 토대로 하여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시
설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의 3개 분야에 대해 매 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전 분기의 성과를 평가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비스관측도 분야의 성과평가물 위에 부록1(성
비요구수준서)에 따라 부무관청은 이송서에 대한 설명조
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제3의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동 기관으로 하여금
관 협약에 따라 성과평가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⑤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정목적 평가항목과
기준은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
다.

제 52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부무관청은 본 협약 제51조(성계의 평가)에 따른 성과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관리운영진 실장기간에 따른 운영
이 개시되기 이전에 부록2(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부무관청이 선정하는 8인(성과위원장

제 52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또한, 사업시행자가 신설하는 5인으로 구성한다.

중 지역시행자는 그인을 제외한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은
주무관청이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본인의 평가위원을
선정하며, 주무부청은 이와 같이 선정된 평가위원장과 및
평가위원을 인정하거라 한다.

(4)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의 관하여는 부록(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3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1) 성과평가위원장은 부록(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
절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위원장은 성과평가
절이 되고, 선정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위원
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성과평가관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
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가진다.

(3) 성과평가관 수행함에 있어서 본 협약의 체결시 예산의

제 53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된 평가 항목 또는 기준 중에서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한하여 부록2(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54 조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1) 부록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3(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에 따라 본 협약에 의해 산정된 평가대상 분기의 다음 분기의 운영비(제51조(성과평가)에 따른 매 평가대상 분기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8장(정부지급금의 신청 및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임내개시 이후 최초 1분기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와 관계없이 제8장(정부지급금의 신청 및 지급)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며, 임내기간중의 최종 분기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해 최종 분기의 성과평가결과도 함께 반영하여 지급한다.

2) 본 상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추무완충에 대한 보고내용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기제가

제 54 조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법령집행세칙

있는 것이 인정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허위기제가 없었
나된 김에 또는 비서함된 수 있었던 제1항에 따라 지급
되는 분기의 정부지급금 상병액의 1.3배를 주무원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성과성가를 받은 분기의 다음 분기의 성과 평가시 총
평가등급이 A인 경우 부록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3
(성과평가에 대한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에 따라 시
달하기로 한다.

⑤ 부록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3(성과평가에 대한 정부지
급금 차등지급 요령)에서 제시된 당해 분기의 총 평가
등급을 C등급 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주무원청후. 사업시
행자에게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무원청피 랍의한 개선
계획에 따라 최선을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연속하여 4분기 이상 제4항의 개선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주무원청은 본 협약 제4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에서 정한 운영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비밀취급규칙

변경 전 실시령안

변경 후 실시령안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운영자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본 협약 제44조(유시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 55 조 (사업수익률의 산정)

제 55 조 (사업수익률의 산정)

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시표금리에 자산률(1.2%)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법인세 차감전 경상 사업수익률을 말한다. 다만, 본 협약체결시의 자산율은 본조에 의한 사업수익률 산정 및 조정시 변경되지 아니한다.

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시표금리에 자산률(1.2%)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법인세 차감전 경상 사업수익률을 말한다. 다만, 본 협약체결시의 자산율은 본조에 의한 사업수익률 산정 및 조정시 변경되지 아니한다.

② 임대개시시의 최초 사업수익률은 제3항의 시표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며,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사업시실의 임대개시 후 5년 동안 적용된다.

② 임대개시시의 최초 사업수익률은 제3항의 시표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며,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사업시실의 임대개시 후 5년 동안 적용된다.

③ 시표금리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을 적용하되, 제2항의 사업수익률 산정을 위한 시표금리는 본 사업시실의 관리운영권 실행기간 개시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③ 시표금리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을 적용하되, 제2항의 사업수익률 산정을 위한 시표금리는 본 사업시실의 관리운영권 실행기간 개시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수익률의 산출평균값(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적용하기로 한다.

- ④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제56조(사업수익률의 조정)에 따라 조정된 사업수익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56 조 (사업수익률의 조정)

- ① 사업수익률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초일 포함) 후 매 5년이 되는 날의 익일(이하 "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기산률은 임대료 지급기간중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② 지표금리는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3자리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 ③ 본 협약에 따른 사업수익률의 산정 또는 조정에 있어서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국채 중 5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지는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대체하며, 이와

수익률의 산출평균값(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적용하기로 한다.

- ④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제56조(사업수익률의 조정)에 따라 조정된 사업수익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56 조 (사업수익률의 조정)

- ① 사업수익률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초일 포함) 후 매 5년이 되는 날의 익일(이하 "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기산률은 임대료 지급기간중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② 지표금리는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3자리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 ③ 본 협약에 따른 사업수익률의 산정 또는 조정에 있어서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국채 중 5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지는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대체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고채 최종호가수의원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위약 제13항(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제 57 조 (임대료의 산정)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업시설의 임대료는 최초 5년 동안(이하 "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이라 한다)에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시에 제지급하는 임대료는 총인간투자비(제12조 내지 제13조)에 제55조(사업수익률의 산정)제2항(이하 "산정되는 사업수익률"이라 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동쪽 후 임대료가 개시되는 날에 최초 임대료 적용 기간에 지급될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액과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는다.

② 임대료는 별표8(임대료 산정방법 및 지급인정)의 원리근거등분항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별표7(부속시설의 운영수익액)에서 제시된 부속시설의 매년도 순이익 규정 사항을 공제하여 본 사업시설 임대료를 산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국고채 최종호가수의원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위약 제13항(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제 57 조 (임대료의 산정)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설의 임대료는 최초 5년 동안(이하 "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이라 한다)에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시에 제지급하는 임대료는 총인간투자비(제12조 내지 제13조)에 제55조(사업수익률의 산정)제2항(이하 "산정되는 사업수익률"이라 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동쪽 후 임대료가 개시되는 날에 최초 임대료 적용 기간에 지급될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액과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는다.

② 임대료는 별표8(임대료 산정방법 및 지급인정)의 원리근거등분항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본 사업시설 임대료를 산정한다.

<p>① 본 협약에 따른 총민기투지비 변경사유로 임대료 조성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 산정방식에 의하여 임대료를 재조정하기로 한다.</p>	<p>② 본 협약에 따른 총민기투지비 변경사유로 임대료 조성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 산정방식에 의하여 임대료를 재조정하기로 한다.</p>
<p>③ 본 사업의 임대료 시급기간(본 사업시행 임대차 존속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과 동일한 20년으로 한다.</p>	<p>④ 본 사업의 임대료 지급기간(본 사업시행 임대차 존속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과 동일한 20년으로 한다.</p>
<p>제 58 조 (임대료의 조정)</p> <p>① 임대료는 본 사업시행의 임대거시 후 매 회계연도 정기평가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제55조(사업수익률의 산정)에 따라 조정되는 수익률에 연동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대료 적용기간 개시(초일 포함)후 네 년이 되는 날의 이익률 조정이준일로 하기로 한다.</p>	<p>제 58 조 (임대료의 조정)</p> <p>① 임대료는 본 사업시행의 임대거시 후 매 회계연도 정기평가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제55조(사업수익률의 산정)에 따라 조정되는 수익률에 연동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대료 적용기간 개시(초일 포함)후 네 년이 되는 날의 이익률 조정이준일로 하기로 한다.</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한 임대료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매 조정이준일에 당해 임대료 적용기간 동안 지급된 임대료를 신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이준일은 조정이준일로부터 5년간 적용된다.</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한 임대료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매 조정이준일에 당해 임대료 적용기간 동안 지급된 임대료를 신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이준일은 조정이준일로부터 5년간 적용된다.</p>

제 59 조 (운영비의 산정)

본 협약에 따라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는 제4조(운영비의 결정 등)제1항의 불변 운영비에 해당산기의 직간접도의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 59 조 (운영비의 산정)

삭제

제 60 조 (운영비의 조정)

① 더우 기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남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운영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60 조 (운영비의 조정)

삭제

10.10.10.10

1.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정부(주무관청 포함)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권역운영권 설정기간 중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주무관청 포함)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운영비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4. 본 협약 제13조(총민산투자비의 변경)에 의하여 총민
간투자비의 변경에 수반하는 운영비의 변경

5. 본 사업 실시법위 외 추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국부편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사 하는 경우

② 협약당사자간에 제1항의 조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약의 법정 전에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제 61 조 (정무지급금의 지급방법)

①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거시 후 최초 5년 동안
제57조(임대료의 산정)에 의해 산정된 임대료를 제54조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다만, 제58조(임대료의 조
정)를 근거로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
할 때마다 조정된 임대료를 제54조(성과평가 결과에 대
한 조치)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제 61 조 (정무지급금의 지급방법)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거시 후 최초 5년 동안
제57조(임대료의 산정)에 의해 산정된 임대료를 사업시
행자에게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다만, 제58조
(임대료의 조정)를 근거로 본 사업시설의 임대거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조정된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
게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지급한다.

(2)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개시 후 6개월 이내 본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따라 임대료와 일괄하여 지급한다.

(3) 최초 임대가 분기 도중에 개시된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당해 분기 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며 지급하며, 임대기간이 분기 도중에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마지막 분기의 초일로부터 임대종료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4) 최초 임대가 분기 도중에 개시된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당해 분기 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임대기간이 분기 도중에 종료될 경우 임대기간의 마지막 분기의 초일로부터 임대 종료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 62 조 (정부시급금의 지급시기)

(1) 사업시행자는 제61조(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정부지급금을 매 분기 최종일 1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도 하며, 주무관청은 매 분기 최종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임대기간중의 최종 분기의 정부지급금은 관리운영권 종료 후 최종 분기에 내는 것과 평가 완료일로부터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도 하며, 동 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제 62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1) 사업시행자는 제61조(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정부지급금을 매 분기 최종일 1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도 하며, 주무관청은 매 분기 최종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한다. 단지 사정

시정자에게 임명하여야 지급한다.

② 주무관청이 본 법학에 정한 경우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포해서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법적규정에 대하여 동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준이자율도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각산하여 지급한다.

제 9 장 주무관청의 시원에 관한 사항

제 63 조 (보상업무 등)

① 주무관청은 본 사업부처의 제본 업무와 이외 관련된 직무를 보상, 기타 손실보상업무 등은 자신의 비용으로 본 사업의 공사업정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기로 한다.

② 주무관청의 보상업무는 직장을 처리의 시인 등으로 사임시 당에게 추수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간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 제67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서 정한 위임배분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② 주무관청이 본 법학에 정한 경우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포해서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법적규정에 대하여 동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준이자율도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각산하여 지급한다.

제 9 장 주무관청의 시원에 관한 사항

제 63 조 (보상업무 등)

① 주무관청은 본 사업부처의 제본 업무와 이외 관련된 직장을 보상, 기타 손실보상업무 등은 자신의 비용으로 본 사업의 공사업정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기로 한다.

② 주무관청의 보상업무는 직장을 처리의 시인 등으로 사임시 당에게 추수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간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 제67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서 정한 위임배분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국립중앙도서관법 제 64 조 (주무관청의 비제정직 직원)

<p>제 64 조 (주무관청의 비제정직 직원)</p> <p>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기, 시공기 또는 운영자가 본 사업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관청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②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열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한다.</p> <p>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할 요청할 경우 적절한 사례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p>	<p>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시공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관청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②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열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한다.</p> <p>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할 요청할 경우 적절한 사례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p>
<p>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련기관과의 협력</p> <p>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설정 및 용지</p> <p>3. 기타 본 사업시설의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 하여 요구되는 행정시 절차</p>	<p>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p> <p>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설정 및 용지</p> <p>3. 기타 본 사업시설의 건설, 용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 하여 요구되는 행정시 절차</p>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3항 기 호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시인한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지시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위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위촉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사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⑤ 사업시행자는 위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제 10 정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65 조 (위험배분의 원칙)

제 65 조 (위험배분의 원칙)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원인 보충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충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이 미리 각자의 부담비용을 정하기로 한다.

②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원인 보충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충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자의 부담비용을 정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도담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시비범위에 균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도담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시비범위에 균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66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 제71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 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여부를 판단한다.

제 66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 제71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 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여부를 판단한다.

1. 실시계획 승인시 정한 기간 내에 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
또 인정되는 경우

1. 실시계획 승인시 정한 기간 내에 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
또 인정되는 경우

2. 본 사업시설의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경우

2. 본 사업시설의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회계법원

회계법원 사무규칙

<p>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회계판결에 의한 과산선고가 있는 경우</p>	<p>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회계판결에 의한 과산선고가 있는 경우</p>
<p>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합병을 위한 경우 제외)</p>	<p>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합병을 위한 경우 제외)</p>
<p>5. 제67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및 제68조(불수할력사유 및 그 처리)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제원(자기자본 및 타인사본)의 조달·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5. 제67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및 제68조(불수할력사유 및 그 처리)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제원(자기자본 및 타인사본)의 조달·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6.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회칙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6.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회칙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7. 본 협약 제11조(취시계획의 승인)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p>	<p>7. 본 협약 제21조(취시계획의 승인)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p>
<p>8. 본 사업시설의 준공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본 법원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출세관리 및 운영의 개시료를</p>	<p>8. 삭제</p>

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3개월 이상 유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하며 단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제50조(성피의 전격)제1항에 따른 시정의 요구를 농업사항에 대하여 연속 3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본 협약에서 정한 성과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일정기간(운영개시 후 1년이 경과한 시기부터 적용)까지의 본 협약 제54조(성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실제 총액이 그 기간까지의 주무관청이 지급한 운영비 총액의 50%이상을 초과하였을 경우(다만, 감사 총액의 재신예 있어 해당 기간 동안 감액된 부분 중 다시 가상되어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농민간투자비의 변결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9. 삭제

10. 삭제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농민간투자비의 변결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67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 제71조(중도해지로 인한)① 협약의 종료)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사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제1항 제1호, 제2호를 포함하여 본 사업시설,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물수

2. 주무관청의 본 사업부서 제공, 보상업무, 지장물의 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정책,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 67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 제71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사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제1항 제1호, 제2호를 포함하여 본 사업시설,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물수

2. 주무관청의 본 사업부서 제공, 보상업무, 지장물의 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정책,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본 사건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등의 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칙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평시적 의무 사항을 정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5. 본 칙약에 정한 인부지급금이 본 칙약에 따른 지급액 및 예정보다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전선기(2) 및 중시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관리비용 일련 설정기간 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본 칙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시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제 68 조 (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 제 68 조 (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 1. 사업기간 중 본 칙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사유로서 인정되는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 (이하 "비정지식 불가항력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비정지식 불가항력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진, 홍수, 태풍, 해일, 화재, 회전, 폭발, 산사태, 대풍, 등으로 인한 재해와 사업자의 합리적인 예측으로도 예측

법정실시범어

변형 또는 시범어

할 수 없었던 위험물이나 문화재의 발견

할 수 없었던 위험물이나 문화재의 발견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악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외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외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외 동항시 규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

4.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외 동항시 규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이하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라 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이하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라 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1. 전쟁 또는 시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화폐기부, 화확 또는 병사상에 의한 부지의 유일 기

2. 화폐기부, 화확 또는 병사상에 의한 부지의 유일 기

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회진 및 해외송금 등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진회기간 중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여 공사 착수가 지정을 받거나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민간부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공사 착수가 지장을 받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계정액을 연기한다.

2. 총민간투자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된다.

가. 비상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민간투자비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주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한다.

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회진 및 해외송금 등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진회기간 중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여 공사 착수가 지정을 받거나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민간부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공사 착수가 지장을 받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계정액을 연기한다.

2. 총민간투자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된다.

가. 비상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민간투자비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주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한다.

면역 간접사업

면역 유급사업

나. 성취리 불가항력 사유로, 일한 총민간부지비 분기 분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 부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한다.

다. 위 '가'호 및 '나'호에서 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민간부지비 증가 분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 부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한다.

다. 위 '가'호 및 '나'호에서 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불가항력사유로 인해 본 사업 시설의 제조달 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유의 성격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각 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㉕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불가항력사유로 인해 본 사업 시설의 제조달 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유치관청 및 운영열을 부담하는 주무관청이 부담하며, 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부담 또는 위험(대기위험 포함)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하 본조 제3항 제69조에 정한 불가항력의 치니 및 전차 등 은 건설기간 중에만 적용된다).

㉖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주부편청 부남 부분에 관하여는, 임대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손정으로 당해 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협약당사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임대료나 관리

㉗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주부편청 부남 부분에 관하여는, 임대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당해 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협약당사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임대료나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 부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후속운영비가 발생하는 경우 유익비도 함께 조정한다.

⑥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 발생으로 인해 본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들 이행하기 위한 재정유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69조(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며, 협의 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도출하기로 한다.

제 69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 협의)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 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이하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라 한다)를

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 부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⑥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 발생으로 인해 본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들 이행하기 위한 재정유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69조(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며, 협의 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도출하기로 한다.

제 69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 협의)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 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이하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라 한다)를

변경 전 실시령위

변경 후 실시령위

한다.

(2)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청구에 대한 이익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협약 당사자에게 상 청구에 대한 이익의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이하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라 한다)를 한다.

(3)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통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본 협약 제13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한다.

(4)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행하여지지 않거나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모두 불가항력사유 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5) 청구가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

한다.

(2)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청구에 대한 이익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협약 당사자에게 상 청구에 대한 이익의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이하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라 한다)를 한다.

(3)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통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본 협약 제13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한다.

(4)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행하여지지 않거나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모두 불가항력사유 발생을 인정된 것으로 본다.

(5) 청구가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

변경 전 실시법

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70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제71조(종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에 의하여 해지되거나 빈간부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에 따라 매수되지 않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② 본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가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1년 및 3개월 전 에 각 1회씩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상담으로, 본 협약에서 정한 운영기간 중 사업시설의 대체 또는 대수선 시기를 고려한 사업시설의 잔여 사용가능기간의 점검과 본 사업시설에 대

변경 후 실시법

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70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제71조(종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에 의하여 해지되거나 빈간부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에 따라 매수되지 않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② 사례

한 신청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이후
본 사업시설의 운영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지료등
포함한 관리운영권료 대상인 본 사업시설 전체를 주
주관청에 부속으로 인계한다.

2. 제1호에 따른 인계시 사업시설은 관리운영권 종료
직후에 부속[(성과요구수준시)의 성과요구수준이 유
시되도록 관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의한 검건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가
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한도**까지 사
업시설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상적 마모의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또한, 심수식파 온 사업시설의 정상
적인 기능을 유지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본 사
업시설의 기능양상 등을 위하여 추가로 수리 또는 보
수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관청에서 부담한다.

4. 제1호에서 사업시설자가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할
유시권료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는 별표10



(관리운영권의 인계)과 같다.

제2항에 비리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이 경상적 것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 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⑤ 삭제

제 71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71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본 협약 제66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후 120일 이내에 해당 통지사항을 서정하지 않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장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 제66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제1항제2호의 사유는 그로 인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본 협약 제66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후 120일 이내에 해당 통지사항을 서정하지 않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장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 제66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제1항제2호의 사유는 그로 인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 전 실시명약

② 사업시행자에게 의한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결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부지급금이나 관리유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본 협약 제67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본 협약 제67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본 협약 제67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제1

변경 후 실시명약

② 사업시행자에게 의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결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부지급금이나 관리유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본 협약 제67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등 시행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본 협약 제67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본 협약 제67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제1

본영 또는 실시영역

항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
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당사
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
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68조(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시 못한 경우

2. 문화재의 관련된 고고학적 작업이나 지상부 또는 위
하부 발견으로 인한 체계, 예방책 또는 동화석이
상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
한 강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우치지 아니
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개시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차폐되거나 어느 협약당사
자가 자기 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급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급차입계약이 동 계약

본영 또는 실시영역

항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당사
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
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68조(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시 못한 경우

2. 문화재와 관련된 고고학적 작업이나 지상부 또는 위
하부 발견으로 인한 체계, 예방책 또는 동화석이
상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
한 강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우치지 아니
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개시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차폐되거나 어느 협약당사
자가 자기 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급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급차입계약이 동 계약

본영진 실시법

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다만,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동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 동지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여타 권리의 부가하여,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메수청구권의 인정)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9조(메수청구권의 인정사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하여 본 협약에 대한 메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40조(메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따라 메수청구 인정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주무관청의 메수청구인정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다.

⑤ 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영진 실시법

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다만,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동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 동지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여타 권리의 부가하여,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메수청구권의 인정)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9조(메수청구권의 인정사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하여 본 협약에 대한 메수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40조(메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따라 메수청구 인정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주무관청의 메수청구인정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다.

⑤ 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변경 전 실시법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무담한다.

⑤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계약당사자(이하 "해지권자"라 한다)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의 발생한 경우 관련 사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과 90일 이내의 기한(이하 "처유기간"이라 한다)을 성하여 당해 사유의 처유를 요구하거나 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해지사유발생의 통지(이하 "해지사유발생통지"라 한다)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의 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처유를 위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이하 "해지통지"라 한다)를 함으로써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본 협약 제72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제 72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① 추무관청은 본 협약 제73조(해지시지급금 및 배수가의 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

변경 후 실시법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이하 "해지권자"라 한다)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과 90일 이내의 기한(이하 "처유기간"이라 한다)을 성하여 당해 사유의 처유를 요구하거나 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해지사유발생의 통지(이하 "해지사유발생통지"라 한다)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의 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처유를 위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이하 "해지통지"라 한다)를 함으로써 본 협약의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 ~~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본 협약 제72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제 72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① 추무관청은 본 협약 제73조(해지시지급금 및 배수가의 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

제 73 조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급시임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인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지급치임계약(등)상 정당한 차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액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한이유로 계산한 이자를 기산하여 지급한다.

주무관청은, 관계 법령상 또는 달리 가진 수 있는 상권에 추기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 73 조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의하여 발표II(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해(약)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돈

제 73 조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급시임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지급치임계약(등)상 정당한 차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액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한이유로 계산한 이자를 기산하여 지급한다.

주무관청은, 관계 법령상 또는 달리 가진 수 있는 상권에 추기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 73 조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발표II(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해(약)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돈

변경 후 권리범역	변경 전 권리범역
<p>관을 지장하며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p> <p>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관을 지장하며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p> <p>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끼리 동등하게 분담한다.</p>	<p>④ 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분담한다.</p>
<p>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u>정신건강복지법</u> 제13장(분쟁해결)의 절차에 따른다.</p>	<p>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협약 제13장(분쟁해결)의 절차에 따른다.</p>
<p>⑥ 본 협약에 따라 주부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해지시지급금 및 미수기(해지시지급금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p>	<p>⑥ 본 협약에 따라 주부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해지시지급금 및 미수기(해지시지급금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p>
<p>1. 본 협약의 취지의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벌표5(보험가입계약) 상에 명시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u>있어서 사업</u></p>	<p>1. 본 협약의 취지의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벌표5(보험가입계약) 상에 명시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u>있어서 사업</u></p>

변상권 결사범약

시행자가 동 보협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역시현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권 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서명한 보협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실제 수령 가능한 보협금은 같은으로 한다.

2. 본 협약이 제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부를 주주관청이 본 제 71조에 따라 먼저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칭되어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될 경우 주주관청 또는 제3자가 먼저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3자로 지칭하여 행하는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4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① 본 협약 제73조(공도제자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공제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 시점에서 본 사업시현(건설기간 종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주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변상권 결사범약

시행자가 동 보협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현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권 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서명한 보협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실제 수령 가능한 보협금은 같은으로 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부를 주주관청이 본 제 71조에 따라 먼저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칭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될 경우 주주관청 또는 제3자가 먼저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3자로 지칭하여 행하는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4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① 본 협약 제73조(공도제자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공제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 시점에서 본 사업시현(건설기간 종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주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변경 전 실시법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종료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위 계약을 주무관청 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주무관청에 대한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용,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소유하거나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의 지산을 취득, 인수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문서 및 기록, 신설도면과 함께 무시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및 취업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위한 후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한다.

변경 후 실시법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종료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주무관청 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주무관청에 대한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용,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소유하거나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의 지산을 취득, 인수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문서 및 기록, 신설도면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및 취업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위한 후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한다.

변경 전 결시법의

변경 후 결시법의

제 75 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지시, 본 사업 또는 임판한 이전을 위해 주무관청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사업시행자와 협의한다.

② 본 협약의 종료는 기간만료인 또는 종도해지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받았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임판 당사자에 의한 본 협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대방 당사자기 위한 당사자에 대해 기질 수 있는 기타 또는 권리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방 당사자는 계속하여 본 협약이 유효하지 존속하는 것으로 신주하고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및 손해배상, 기타 보상, 구제수단 또는 시정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어느 일방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속적인 또는 추후의 위반에 대한 당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75 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지시, 본 사업 의 임판한 이전을 위해 주무관청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사업시행자와 협의한다.

② 본 협약의 종료는 기간만료일 또는 종도해지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임판 당사자에 의한 본 협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대방 당사자기 위한 당사자에 대해 기질 수 있는 기타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방 당사자는 계속하여 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및 손해배상, 기타 보상, 구제수단 또는 시정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어느 일방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속적인 또는 추후의 위반에 대한 당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변경 전 실시법의

변경 후 실시법의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제조달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제조달

제 76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제 76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① 민권투사법 또는 본 협약에 널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
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① 민권투사법 또는 본 협약에 널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
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에게 본 협약, 관리
운영권 및 실체, 공사 등의 노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식재산 또는 기타 ~~권리~~ 자산
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나
만,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은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하며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담보권을 선정하
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에게 본 협약, 관리
운영권 및 실체, 공사 등의 노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식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
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
만,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하며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담보권을 선정하
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로 한다.

제 77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 77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① 본 협약 제73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제1항 및

① 본 협약 제73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제1항 및

제15장에 따라 주부관청의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사유발생 통지등 및 주 처유기간 내에 말해 사유의 처유기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처유를 위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이노 기판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증거를 전 경우, 채권금융기관(또는 내리은행)은 서면통지(이하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라 한다)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대체사업자를 주부관청에 추천할 수 있다.

제16장에 따라 주부관청의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사유발생 통지등 및 주 처유기간 내에 말해 사유의 처유기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처유를 위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이노 기판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증거를 전 경우, 채권금융기관(또는 내리은행)은 서면통지(이하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라 한다)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대체사업자를 주부관청에 추천할 수 있다.

2)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등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주부관청을 사업시행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추천된 대체사업자의 수를 영부에 대하여 통지한다.

2)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등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주부관청을 사업시행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추천된 대체사업자의 수를 영부에 대하여 통지한다.

3) 주부관청과 채권금융기관 및 수용된 대체사업자가, 주부관청의 대체사업자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항에 언급된 사업시행자의 7명사유 및 채권금융기관의 위 부문의해사유에 이점을 위한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저신들의 편안에 따라 주부관청에 대한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등 취소하는 서면통지(이하 "취소통지"라 한다)를 보낼 수 있고, 주부관청 또한 대체사업자의 수를 취소(이하 "수용취소"라 한다)할 수 있다. 취소통지나 수용취소가 없는 경우, 본

3) 주부관청과 채권금융기관 및 수용된 대체사업자가, 주부관청의 대체사업자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항에 언급된 사업시행자의 7명사유 및 채권금융기관의 위 부문의해사유에 이점을 위한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저신들의 편안에 따라 주부관청에 대한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등 취소하는 서면통지(이하 "취소통지"라 한다)를 보낼 수 있고, 주부관청 또한 대체사업자의 수를 취소(이하 "수용취소"라 한다)할 수 있다. 취소통지나 수용취소가 없는 경우, 본

변경 전 실시범역

는 대체사업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자는 신청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당 사업자들의 권리는 마치 대체사업사 추천동시사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제 78 조 (출자자 및 출자시분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인 모평씨앤에이주식회사의 예정출자자 구성 및 예정출자지분은 별표2(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와 같다.

②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에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중립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 규모가 전체 출자시분의 5% 이상인 경우는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을 가진 개별 회사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하고, 승인여부와 내용은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한다.

가. 출자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출자자의 채무상태 또는

변경 후 실시범역

는 대체사업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자는 신청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당 사업자들의 권리는 마치 대체사업사 추천동시사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제 78 조 (출자사 및 출자시분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인 모평씨앤에이주식회사의 예정출자자 구성 및 예정출자지분은 별표2(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와 같다.

②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는 출자지분 또는 출자에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 규모가 전체 출자시분의 5% 이상인 경우는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을 가진 개별 회사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하고, 승인여부와 내용은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한다.

가. 출자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출자자의 채무상태 또는

변경 전 실시령약

변경 후 실시령약

신용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용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출자자 변경 이후 완공 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출자자 변경 이후 완공 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기타 출자자 변경이 사회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타 출자자 변경이 사회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양도 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양도 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전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의 예상출자자 및 지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단,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예정출자자 및 지분의 변경이 가능하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전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의 예상출자자 및 지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단,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예정출자자 및 지분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 79 조 (자급제조달의 질차)

제 79 조 (자급제조달의 질차)

변경 전 실시업약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 (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 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 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긍정적인 시장가격 및 소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야 하며 자본구조 변경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위 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실시업약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 (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 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 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긍정적인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야 하며 자본구조 변경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위 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변경 전 실시법

제 80 조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① 자금제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부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50:5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은 기준채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 비교채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③ 주부관청은 자금제조달에 따른 주부관청측 공유 이익을 임대료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주부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협약당사자가 공동하게 부담한다.

⑤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 시 정리 절차가 없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시정

변경 후 실시법

제 80 조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① 자금제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부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50:5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은 기준채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 비교채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③ 주부관청은 자금제조달에 따른 주부관청측 공유 이익을 임대료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주부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외 관련된 비용은 협약당사자가 공동하게 부담한다.

⑤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 시 정리 절차가 없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시정

변경 전 실시법

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자금제조달 관련 세부시침 및 소건에 따른다.

제 13 장 분쟁의 해결

제 81 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중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본 협약 제82조(중재)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③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증거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한다.
- ④ 일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 지급금액은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변경 후 실시법

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자금제조달 관련 세부시침 및 소건에 따른다.

제 13 장 분쟁의 해결

제 81 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중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본 협약 제82조(중재)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③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증거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한다.
- ④ 일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실제 지급일 전까지 기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실제 지급일 전까지 기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82 조 (중제)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부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을 위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인의 중재로 해결하도록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부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을 위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인의 중재로 해결하도록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중재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중재판정은, 무효판 결소 수위에 따르지 않고 협약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협약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권한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중재판정은, 무효판 결소 수위에 따르지 않고 협약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협약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권한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14 장 기타 사항

제 14 장 기타 사항

제 83 조 (협약의 변경)

제 83 조 (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④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전 실시법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구성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 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84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5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

변경 후 실시법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구성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 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84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5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

변경 전 실시법

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있다.

제 86 조 (일부무효)

복정 관할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법률과 본 협약상 또는 다른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7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묵시적 조건이 있는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어떠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변경 후 실시법

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 86 조 (일부무효)

복정 관할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법률과 본 협약상 또는 다른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7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묵시적 조건이 있는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어떠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 88 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88 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이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련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련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식·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식·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종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4. 종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변경 전 실시협약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본 조 제2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부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 89 조 (통지)

① 부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수도권청에 대한 통지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로 266(부평4동 879)
 수신 : 부평구청장
 참조 : 문화공보과장
 전화 : (032)509-6430 팩스 : (032)509-7620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변경 후 실시협약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본 조 제2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부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 89 조 (통지)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수도권청에 대한 통지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로 266(부평4동 879)
 수신 : 부평구청장
 참조 : 문화공보과장
 전화 : (032)509-6430 팩스 : (032)509-7620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남양주 출생본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0-8
수신 : (가칭)부영씨엔에이(주) 대표이사 윤본기
참조 : 신성건설(주) 건축부장
전화 : (032)420-0435 팩스 : (032)420-1069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가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의 "송달된 때"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결,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신상환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 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0 조 (언어)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되거나 영문본을 작성한 경우 그 효력에 있어서는 한글본이 우선한다.

부영씨엔에이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0-8
수신 : 부영씨엔에이(주) 대표이사 김형제
참조 : 신성건설(주) 건축부장
전화 : (032)420-0435 팩스 : (032)420-1059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의 "송달된 때"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 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0 조 (언어)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되거나 영문본을 작성한 경우 그 효력에 있어서는 한글본이 우선한다.

변경 전 실시협약

변경 후 실시협약

제 91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92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 91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며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92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본 협약서 2부씩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2007년 4월 24일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본 협약서 2부씩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2부씩 보관한다.

2008년 2월 11일

별표 1

별표 1

본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의 개요

○ 사업개요

○ 사업개요

사업명	부평문화비서관 민간부지사업	사업명	부평문화비서관 민간부지사업
소재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동 186-411번지 외 5필지	소재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동 186-411번지 외 5필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절도보호지구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절도보호지구
나지면적	13,386㎡ (4,049평)	나지면적	13,386㎡ (4,049평)
건축면적	3,972.15㎡ (1,201.57평)	건축면적	3,972.15㎡ (1,201.57평)
수면적	10,242.13㎡ (4,913.22평, 102.79%) - 지함유면적 : 15,600㎡	수면적	10,242.13㎡ (4,913.22평, 102.79%) - 지함유면적 : 15,600㎡
건폐율	일반수거지역 37.20%, 자연녹지지역 19.80%	건폐율	일반주거지역 37.29%, 자연녹지지역 19.36%
용적률	일반수거지역 66.50%, 자연녹지지역 45.10%	용적률	일반주거지역 66.63%, 자연녹지지역 45.13%
도로계획	구지 폭약 8m, 서측 20m, 남측 10m, 북측 30m 도로	도로계획	구지 폭약 8m, 서측 20m, 남측 10m, 북측 30m 도로

변경 전 실시업약

변경 후 실시업약

건축규모	·지상3층, 지하2층	건축규모	·지상3층, 지하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주차대수	·총 291대 (육내 239대, 육외 58대) - 법정 163대	주차대수	·총 291대 (육내 239대, 육외 58대) - 법정 163대
조경면적	·자연녹지지역 2,673.99㎡ - 42.8%(법정40%) ·일반주거지역 1,393.58㎡ - 18.2%(법정15%)	조경면적	·자연녹지지역 2,673.99㎡ - 42.8%(법정40%) ·일반주거지역 1,393.50㎡ - 18.2%(법정15%)
공계공지	·1,107.24㎡ (8.27% - 변경 8%)	공계공지	·1,107.24㎡ (9.27% - 변경 8%)

- 성곽요구수준서 반연출 위한 면적의 증감 가능




- 성과요구수준서 반연출 위한 면적의 증감 가능



출자사 구성 및 지분율

출 자 자	출 자 예 정 비 율	비 고
신전개발(주)	10.0%	신문 운영사
대한생명보험(주)	26.0%	재무적 출자자
증소기업은행	15.0%	재무적 출자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5.0%	재무적 출자자
동양생명보험(주)	15.0%	재무적 출자자
신성건설(주)	1.0%	건설 출자자 (대표회사)
(주)원산정공	4.0%	건설 출자자 (지역업체 출자자)
(주)한암	15.0%	건설 출자자 (지역업체 출자자)
합 계	100.0%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출 자 자	출 자 예 정 비 율	비 고
동북아인프라사보특별 자산투자신탁 제2호 상기 수탁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0.0%	재무적 출자자
대한생명보험(주)	25.0%	재무적 출자자
증소기업은행	15.0%	재무적 출자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5.0%	재무적 출자자
동양생명보험(주)	15.0%	재무적 출자자
신성건설(주)	16.0%	건설 출자자 (대표회사)
(주)원산정공	4.0%	건설 출자자 (지역업체 출자자)
합 계	100.0%	삭제

변경 전 실시업약

변경 후 실시업약

총민간투자자비

총민간투자자비

(단위 : 백만원, 불변가격 기준)

(단위 : 백만원, 불변가격 기준)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1. 조사비	-	-	-	-	-	-	1.	조사비	-	-	-
2. 설계비	1,356	1,356	-	-	-	-	2.	설계비	1,356	-	-
3. 공사비	32,354	3,727	15,769	12,057	15,769	12,057	3.	공사비	3,727	15,769	12,857
4. 보상비	-	-	-	-	-	-	4.	보상비	-	-	-
5. 부대비	2,314	890	798	627	798	627	5.	부대비	890	798	627
6. 운영설비비	-	-	-	-	-	-	6.	운영설비비	-	-	-
7. 세계공과금	-	-	-	-	-	-	7.	세계공과금	-	-	-
8. 영인준비금	296	93	111	92	111	92	8.	영인준비금	93	111	92
9. 물가변동비	1,415	87	605	722	605	722	9.	물가변동비	87	605	722
10. 건설기간이자	1,534	-	446	1,088	446	1,088	10.	건설기간이자	-	446	1,088
총투자비(A=Σ1~10)	39,268	6,153	17,729	15,387	17,729	15,387	총투자비(A=Σ1~10)		6,153	17,729	15,387
건설보조금(B)	-	-	-	-	-	-	건설보조금(B)		-	-	-
총민간투자자비(C=A-B)	39,268	6,153	17,729	15,387	17,729	15,387	총민간투자자비(C=A-B)		6,153	17,729	15,387

변경 전 실시협약

변경 후 실시협약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기준)

구 분	총민간투자비	자기자본	타인자본	구 분	총민간투자비	자기자본	타인자본
계	39,268	3,931	35,337	계	39,268	3,931	35,337
2006년	6,153	3,931	2,222	2006년	6,153	3,931	2,222
1사분기	-	-	-	1사분기	-	-	-
2사분기	1,829	1,829	-	2사분기	1,829	1,829	-
3사분기	1,273	1,273	-	3사분기	1,273	1,273	-
4사분기	3,052	829	2,222	4사분기	3,052	829	2,222
2007년	17,729	-	17,729	2007년	17,729	-	17,729
1사분기	1,408	-	1,408	1사분기	1,408	-	1,408
2사분기	4,462	-	4,462	2사분기	4,462	-	4,462
3사분기	5,322	-	5,322	3사분기	5,322	-	5,322
4사분기	6,537	-	6,537	4사분기	6,537	-	6,537
2008년	15,386	-	15,386	2008년	15,386	-	15,386
1사분기	4,273	-	4,273	1사분기	4,273	-	4,273
2사분기	9,617	-	9,617	2사분기	9,617	-	9,617
3사분기	1,496	-	1,496	3사분기	1,496	-	1,496
4사분기	-	-	-	4사분기	-	-	-
비 고	100.00%	10.00%	90.00%	비 고	100.00%	10.00%	90.00%

변경 전 실시업약



변경 후 실시업약



보험가입계획

사업명 : 우정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

보험대상물	예정부보대상	부보기간	예정보협요율	비고
건설공사 부 합	공사비, 감리비, 운영설비비	공사착공 ~ 완공시점	0.20%	제3자 배상책임 포함
예정이익 신설보험	고정운영비용, 지급이자	공사착공 ~ 완공시점	0.35%	보상기간 1년 면책기간 60일
사용자배상 책임 보험	법인인건비	공사착공 ~ 완공시점	0.10%	1인당1억원 1사고당2억원
재산증합 부 합	운영기애	운영기간 (년단위갱신)	0.04%	영업대상 책임보험 포함
기업휴지 부 합	고정운영비용, 지급이자	운영기간 (년단위갱신)	0.05%	보상기간 1년 면책기간 30일
사용자배상 책임 보험	법인인건비	운영기간 (년단위갱신)	0.10%	1인당1억원 1사고당2억원

보험가입계획

사업명 : 우정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

보험대상물	예정부보대상	부보기간	예정보협요율	비고
건설공사 부 합	공사비, 감리비, 운영설비비	공사착공 ~ 완공시점	0.20%	제3자 배상책임 포함
예정이익 상설보험	고정운영비용, 지급이자	공사착공 ~ 완공시점	0.35%	보상기간 1년 면책기간 60일
사용자배상 책임 보험	법인인건비	공사착공 ~ 완공시점	0.10%	1인당1억원 1사고당2억원

변경 전 실시협약

- * 단, 상기 보험요율은 유성 교운로 세부자료 제출, 기타 조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은 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보험증권으로 가입하고자 한 보험가입계좌서론 제출합니다.

침익에강보험사

서울특별시 송로구
세종로 178

현대리상화세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사장


변경 후 실시협약

- * 단, 상기 보험요율은 권장 요율로 세부자료 제출, 기타 조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보험증권으로 가입하고자 한 보험가입계좌서론 제출합니다.

침익에정보회사

서울특별시 송로구
세종로 178

현대리상화세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사장
하 종 석



별표 6



부속시설

부속시설
삭제

구분	면적(평)	비고
이투삼	27	
매점	89	
들라위삼	44	
목스도어	46	
카베네리아	205	
진로	405	

성리요구부서 안착을 위한 면적의 증가 기준



변경 전 실시협약

변경 후 실시협약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
상제

(단위 : 백만원, 2005년 12월 2일 문민가격 기준)

년·도	문영순이익	년·도	문영순이익
2008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2009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2010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2011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2012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2013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2014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2015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2016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2017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2018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2019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2020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2021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2022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2023년	1	1	10
	2	2	10
	3	3	10
	4	4	10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
상제

변경 후 실시협약

변경 전 실시협약

2013년	1	10	1	10
	2	10	2	10
	3	10	3	10
	4	10	4	10
2014년	1	10	1	10
	2	10	2	10
	3	10	3	10
	4	10	4	10
2015년	1	10	1	10
	2	10	2	10
	3	10	3	10
	4	10	4	10
2016년	1	10	1	10
	2	10	2	10
	3	10	3	10
	4	10	4	10
2017년	1	10	1	10
	2	10	2	10
	3	10	3	10
	4	10	4	10
2018년	1	10	1	10
	2	10	2	10
	3	10	3	10
	4	10	4	10
2019년	1	10	1	10
	2	10	2	10
	3	10	3	10
	4	10	4	10
		합 계	비치	771

2019년 10월 10일

별표 8

별표 8

임대료 산정방법 및 지급연정

임대료 산정방법과 지급일정 및 일반관리비

이러 식은 온 임대 처에서 직원수익률(CMR)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임.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55조(산점수익률의 산정) 및
 제56조(직원수익률의 산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 분기별 임대료금 산출
 하여 지급함.

아래 표는 온 임대 체질시 직원수익률(CMR)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임.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55조(직원수익률의 산정) 및
 제56조(직원수익률의 산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 분기별 임대료금 산출
 하여 지급함.

(단위 : 백만원, 결산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 백만원, 결산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연도	임대료	년도	임대료	연도	임대료
2008년	270 937 837 837 837	2008년	270 937 837 837 837	2008년	837 837 837 837 837
2009년	007 837 837 837	2009년	007 837 837 837	2009년	007 837 837 837
2010년	007 837 837 837	2010년	007 837 837 837	2010년	007 837 837 837
2011년	807 007 837 837	2011년	807 007 837 837	2011년	807 007 837 837
2012년	837 807 837 837	2012년	837 807 837 837	2012년	837 807 837 837
2013년	837 837 837 837	2013년	837 837 837 837	2013년	837 837 837 837
2019년	270 937 837 837 837	2019년	270 937 837 837 837	2019년	837 837 837 837 837
2020년	007 837 837 837	2020년	007 837 837 837	2020년	007 837 837 837
2021년	007 837 837 837	2021년	007 837 837 837	2021년	007 837 837 837
2022년	807 007 837 837	2022년	807 007 837 837	2022년	807 007 837 837
2023년	837 807 837 837	2023년	837 807 837 837	2023년	837 807 837 837
2024년	837 837 837 837	2024년	837 837 837 837	2024년	837 837 837 837

변경 전 실시협약

2014년	1	837			837
	2	837			837
	3	837			837
	4	837			837
2015년	1	837			837
	2	837			837
	3	837			837
	4	837			837
2016년	1	837			837
	2	837			837
	3	837			837
	4	837			837
2017년	1	837			837
	2	837			837
	3	837			837
	4	837			837
2018년	1	837			837
	2	837			837
	3	837			837
	4	837			837
합 계				81시	66,983

주) 1. 구부관청의 요청에 의거 시흥의례교 신강시 국제금리에 출자체회사에 출자
 주세출 인정함
 2. 2017년 3월 31일 시흥 5공임인의 국제금리 평균금(4.80%)에 대한 출자금(2,250)을 반환하여 인정함

변경 후 실시협약

2014년	1	837			837
	2	837			837
	3	837			837
	4	837			837
2015년	1	837			837
	2	837			837
	3	837			837
	4	837			837
2016년	1	837			837
	2	837			837
	3	837			837
	4	837			837
2017년	1	837			837
	2	837			837
	3	837			837
	4	837			837
2018년	1	837			837
	2	837			837
	3	837			837
	4	837			837
합 계				81차	66,983

주) 1. 구부관청의 요청에 의거 시흥의례교 신강시 국제금리에 출자체회사에 출자
 주세출 인정함
 2. 2017년 3월 31일 시흥 5공임인의 평균금(4.80%)에 대한 출자금(2,250)을 반환하여 인정함

3. 일반관리비는 본연가액(변경실시협약회계일 기준)으로 본연출연리실액기
 상 동년 200%에 한함. 본회칙 36제단원이며 지급시에는 소비자를 기조로 상응부
 출 반영하여 경상가액으로 환산한 후 임대료와 맞물 지급받기 위.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in the right margin, including a date "2017. 10. 10" and a signature.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의 구성
식재

(단위 : 백만원, 2007년 12월 2일 결산기준 기준, 무기기준까지 별도)

연도	운영비	년도	운영비
2008년	1	2019년	2
	2		3
	3		4
	4		1
2009년	1	2020년	2
	2		3
	3		4
	4		1
2010년	1	2021년	2
	2		3
	3		4
	4		1
2011년	1	2022년	2
	2		3
	3		4
	4		1
2012년	1	2023년	2
	2		3
	3		4
	4		1
2013년	1	2024년	2
	2		3
	3		4
	4		1



변경 전 실시업약

변경 후 실시업약

2014년	1	286	2025년	1	286
	2	286		2	286
	3	286		3	286
	4	286		4	286
2015년	1	286	2026년	1	286
	2	286		2	286
	3	286		3	286
	4	286		4	286
2016년	1	286	2027년	1	286
	2	286		2	286
	3	286		3	286
	4	286		4	286
2017년	1	286	2028년	1	286
	2	286		2	286
	3	286		3	191
	4	286		4	
2018년	1	286	합 계	81차	22,871
	2	286			
	3	286			
	4	286			





번호 10

관리운영권의 인계
삭제

관리운영권의 인계

○ 운영종표시 주부내성에 무상으로 인계할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장비목록

집기 및 비품내역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컴퓨터		4	1,000,000	4,000,000	
프린터	SP-2432J	3	200,000	600,000	
안수객상	1360 * 810 * 750	1	135,000	135,000	
편수책상	1060 * 760 * 750	14	76,600	1,072,400	
회진의자	대	1	75,000	75,000	
회전안자	팔걸이 소	14	60,000	840,000	
왕인의자	팔걸이 소	7	35,000	245,000	
도면보관함	대	1	500,000	500,000	



변경 후 실시업약

변경 전 실시업약

회일박스	2 단	5	56,700	283,500
케비닛	3 * 6R	5	80,000	400,000
워킹행사 표	1200 * 450	5	20,100	100,500
화이트도 드	1200 * 900	1	65,000	65,000
전卓기	키포트화기	5	200,000	1,000,000
진화기	일반진화기	8	30,000	240,000
합 계				8,556,900

2014.03.13
[인강영역]

장비명	모델명	단 가	수량	금액	비고
무전기		300,000	14	4,200,000	
순환시계		200,000	1	200,000	
가스총		100,000	5	500,000	
경구장비		25,000	5	125,000	
합 계				5,025,000	

변경 후 실시범위

변경 전 실시범위

장비명		제 조 사	모 델 명	단 가	수 량	합계	비고
수압 세척기	독일Kraibitz 사단	200BAR TH-880S	4,900,000	1	3,900,000		
리 스 링 카	국산 Line산인	MOPPER	2,600,000	1	2,600,000		
건습식진공청 소기	독일HAKO 사	SUPERVAC5 50	700,000	10	7,000,000		
푸로아 미선	국산	16"	300,000	1	300,000		
무리청세척기	독일Mayer 사	Transkit	200,000	1	200,000		
육압상다리	미국산		10,000,000	1	10,000,000		
A/L 사다리	국산	A형 1,2,3M	60,000	3	180,000		
사각오빈카	국산		80,000	1	80,000		
마 포 짜 개	국산		60,000	3	180,000		
쓰레기분반구	국산	75 L용	30,000	1	30,000		
합 계					32,470,000		



변경 후 실시범위

변경 전 실시범위

구분	구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비고
디스크	4INCH	DA	60,000	1	60,000	LG선전
그리퍼	K-3H	UA	450,000	1	450,000	미시
PIPE CLEANER	mm	SH		1	50,000	세신
WRENCH	TYP5(25C)	T	60,000	1	60,000	화반장면
막걸리	5 INCH	DA	60,000	1	60,000	외신
유다용		UA	280,000	1	280,000	HYCIPIT SU
은 숟가락		C				동화
HOOK	3202	DA	250,000	1	250,000	독과
METFO	DIGITAL	E				신양
멀티 랙스터	DH5R6TR	UA	10,000	2	20,000	관성공업
메가 테스터	500V 1000용	EA	35,000	1	35,000	LOBSTE N
AL 사다리	2M (A형)	EA	50,000	2	100,000	LOBSTE R
TOOL BOX	중형	EA	7,000	1	7,000	LOBSTE R
칼로즈	5 INCH	EA	9,000	3	27,000	15,000
나저	6 INCH	EA	9,000	3	27,000	1,500
철판	12 INCH	EA	15,000	1	15,000	45,000
경전 드래미머	0-600V	EA	1,500	1	1,500	누일계
전원 고무장갑	23KV	수		1	45,000	일계



하원기여회

변경 신청서

집현속회	25KV	속	1	90,000	1	90,000	일계
안선모	23KV	EA	3	6,000	3	18,000	음선
OIL GUN		EA	1	5,000	1	5,000	극장
솔리온GUN		EA	1	3,000	1	3,000	정신
부탄가스보시		EA	1	2,000	1	2,000	KIC
플라스틱	8 INCH	EA	1	8,500	1	8,500	AIGO
플라스틱	10 INCH	EA	1	12,000	1	12,000	AIGO
플라스틱	12 INCH	EA	1	15,000	1	15,000	AIGO
플라스틱	15 INCH	EA	1	27,000	1	27,000	AIGO
바이스그라이머	10 INCH	EA	1	14,000	1	14,000	USA
플라이더	6 INCH	EA	1	4,000	1	4,000	세신
나그리스	14 INCH	EA	1	35,000	1	35,000	독일제
스티니(OPEN	14 INCH	SE	1	43,000	1	43,000	세신
수분봉도기		EA	1	45,000	1	45,000	방자
스판도일	1-10MM	SE	1	55,000	1	55,000	SKF
HOLE	15 INCH	각	1	40,000	1	40,000	독산
베시	8 INCH	각	3		3		LOBSTE



변경 후 실시협약

변경 전 실시협약

노라이버(+)	6*	EA	10,000	30,000	3	JAPAN
드라이버(+)	R*	EA	3,000	9,000	3	JAPAN
드라이버(-)	6*	EA	3,500	10,500	3	JAPAN
드라이버(-)	a*	EA	3,000	9,000	3	JAPAN
주역노라이버	경품	EA	3,000	3,000	1	JAPAN
건설드라이버	600V	EA	1,500	1,500	1	JAPAN
시게드라이버	6PC	NP T	6,000	6,000	1	JAPAN
안전벨트		EA	30,000	30,000	1	국산
전기코대기	권총용	EA	15,000	15,000	1	신영
산소		FA	170,000	170,000	1	국산
LPG		EA	60,000	60,000	1	국산
산소용접기 치	용접용	EA	12,000	12,000	1	국산
산소용접기 치	용접용	EA	10,000	10,000	1	국산
압력조정기	산소	EA	18,000	18,000	1	국산
압력조정기	LPG	EA	10,000	10,000	1	국산
산소용구르마		EA	42,000	42,000	1	국산



변경 후 실시협약

변경 전 실시협약

유형명	EA	1	5,000	1	5,000	국산
용구 스페너	EA	1	48,000			AIGO
장키스파너	EA	1	100,000			AIGO
임구스파너	SE	1	2,000			세신
양구스파너	SE	1	8,000			세신
합식가위	EA		15,000		15,000	PROSHI P
산공가위	FA	1	15,000		15,000	삼익플
총	SE	1	15,000		15,000	대양
육절기	EA	1	85,000		85,000	대양
충진선	M	50	1,500		90,000	심원
봉투선	M	60	2,300		138,000	국산
중계	EA	1	1,000		1,000	국산
자동충진면	조	1	7,000		7,000	국산
유점장갑	속	1	3,000		3,000	국산
회사용	M	10	7,000		70,000	국산
용갑홀더	FA	1	4,000		4,000	국산
봉투홀더	FA					국산



보경 전 실시업의

보경 후 실시업의

플러그노기리	6.5V	EA	4,000	4,000	4,000	국산
플러그노기리	13#	EA	1,000	5	5,000	국산
드릴	GBH 2-20	EA	3,500	5	17,500	BOSCH
광형스기		EA	210,000	1	210,000	국산
산소호스	원질 30M	EA	55,000	1	55,000	국산
가스누설검지 기	LPG/NG용	EA	45,000	1	45,000	국산
조도계		EA	130,000	1	130,000	국산
벽크리켓기	다크모션/음 향식)	EA	50,000	1	50,000	국산
벽집진선 권	SOM 무접시	EA	165,000	1	165,000	국산
흡사	SOM	EA	25,000	1	25,000	국산
수염대	중형(600mm)	EA	30,000	1	30,000	TAJIMA
흡자	5M	EA	15,000	1	15,000	국산
합 계			9,000	1	9,000	TAJIMA
					3,849,000	

보경 후 실시업의



해지시지급금

○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 건설기간 중에는 기투자액의 민간투자자분(민간투자비-건설이차)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별로 차등화 하고 산정
 - 운영기간 중에는 잔여기간의 임대료의 현재가치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차등화 하여 산정
- ※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

구분	건설기간	운영기간
사업자 귀책	[해지 시 기투자액 민간투자비] - [해지 시 기투자액 투입지출금]	[잔여기간의 시설투자액 - 수익들3]로 임의한 현재가치) - (누입지출금) = C
비정차적 불가항력	[해지 시 기투자액 민간투자자분] × [1 + A1,]	(C) + (D - C) × 1/3
정차적 불가항력	[해지 시 기투자액 민간투자자분] × [1 + (A+B)/2]	(C) + (D - C) × 2/3
주무관청 귀책	[해지 시 기투자액 민간투자자분] × [1 + B2,]	잔여기간의 시설투자액을 해지 시 작용된 수익들4]로 임의한 현재가치 = D

해지시지급금

○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 건설기간 중에는 기투자액의 민간투자자분(민간투자비-건설이차)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별로 차등화 하여 산정
 - 운영기간 중에는 잔여기간의 임대료의 현재가치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차등화 하여 산정
- ※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

구분	건설기간	운영기간
사업자 귀책	[해지 시 기투자액 민간투자자분] - [해지 시 기투자액 투입지출금]	[잔여기간의 시설투자액 - 수익들3]로 임의한 현재가치) - (누입지출금) = C
비정차적 불가항력	[해지 시 기투자액 민간투자자분] × [1 + A1,]	(C) + (D - C) × 1/3
정차적 불가항력	[해지 시 기투자액 민간투자자분] × [1 + (A+B)/2]	(C) + (D - C) × 2/3
주무관청 귀책	[해지 시 기투자액 민간투자자분] × [1 + B2,]	잔여기간의 시설투자액을 해지 시 작용된 수익들4]로 임의한 현재가치 = D

변경전 실시업약

- 주: 1,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제금리]
 2,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제금리+가산금]
 3, 4, 해지 당시 시정입금료 계산 시 적용된 [국제금리+가산금]
 * 국제금리(A) 및 임대수익률(B)



변경 후 실시업약

- 주: 1,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제금리]
 2,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제금리+가산금]
 3, 4, 해지 당시 시정입금료 계산 시 적용된 [국제금리+가산금]
 * 국제금리(A) 및 임대수익률(B)



원표 12

충당금 적립인정

(단위 : 백만원, 2005년 12월 2일 문민가격 기준)



원표 12

충당금 적립인정

상계



변경 전 실시현악

별표 13

제우모텔

○ 제우모텔 WORK SHEET FILE로 변경함.



변경 후 실시현악



제우모텔

○ 제우모텔 WORK SHEET FILE로 변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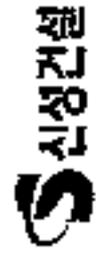
Index	Contents
I. 주민안부지역 신청	후시온비 및 후후지비 신청
1. 후후지비 신청	합동별 후시온비 세부신청구서
2. 후시온비 세부신청구서	후후지비/후기연봉비 신청, 후안인후지비/후기연봉비 신청
3. 해비비 신청내역	정무지정금 신청 및 승인
4. 정무수입금 신청	일회 및 출원인사입비 및 복은간후지비 신청
5. 물리안부지역 신청	
II. 과원포괄개혁	후후지비 지원수익제외
III. 후임금 산입제외	취직장기후임금, 후임연계후
IV. 정무수입금 산출내역	시상임과로, 양안권리비
V. 일반후지비 산출내역	일반권리비 출원금, 일반권리비 지원기준 모형으로 산출내역
1. 일반권리비 출원금	
2. 후임연계 산출내역	본 지역의 세입지정수익률 신청
VI. 세입 연계소득 환액	후회소득환액, 일반이득 산출내역
1. 후회소득환액	후회소득환액, 후회연계, 후회연계금리환계 시비
2. 후회소득환액	후회연계소득표
3. 후회소득환액	자산및세비, 무제형세비, 제정연세비
4. 후회소득환액	모형기준을 지원기준으로 각각연봉내역
5. 후회소득환액	

Financial Model



Financial Model

14-Feb-05 2:03 PM



2. 연도별 예산액(단위: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 인건비	1,756	1,250											1,756
2. 운영비	32,350	11,835	9,807	1,237	324	4,746	5,743	5,959	6,313	6,967			70,054
3. 기타	5,214	870	397	72	303	221	292	179	401	47			8,134
4. 기타	1,333	58	133	60	194	282	276	171	400	47			3,096
합계	27,693	13,415	10,337	1,369	521	5,249	6,432	6,309	7,124	7,571			66,166
가. 인건비	1,756	1,250											1,756
나. 운영비	32,350	11,835	9,807	1,237	324	4,746	5,743	5,959	6,313	6,967			70,054
다. 기타	5,214	870	397	72	303	221	292	179	401	47			8,134
라. 기타	1,333	58	133	60	194	282	276	171	400	47			3,096
총합	27,693	13,415	10,337	1,369	521	5,249	6,432	6,309	7,124	7,571			66,166
구분별 예산액													
1. 인건비	1,756	1,250											1,756
2. 운영비	32,350	11,835	9,807	1,237	324	4,746	5,743	5,959	6,313	6,967			70,054
3. 기타	5,214	870	397	72	303	221	292	179	401	47			8,134
4. 기타	1,333	58	133	60	194	282	276	171	400	47			3,096
합계	27,693	13,415	10,337	1,369	521	5,249	6,432	6,309	7,124	7,571			66,166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 인건비	1,756	1,250											1,756
2. 운영비	32,350	11,835	9,807	1,237	324	4,746	5,743	5,959	6,313	6,967			70,054
3. 기타	5,214	870	397	72	303	221	292	179	401	47			8,134
4. 기타	1,333	58	133	60	194	282	276	171	400	47			3,096
합계	27,693	13,415	10,337	1,369	521	5,249	6,432	6,309	7,124	7,571			66,166
가. 인건비	1,756	1,250											1,756
나. 운영비	32,350	11,835	9,807	1,237	324	4,746	5,743	5,959	6,313	6,967			70,054
다. 기타	5,214	870	397	72	303	221	292	179	401	47			8,134
라. 기타	1,333	58	133	60	194	282	276	171	400	47			3,096
총합	27,693	13,415	10,337	1,369	521	5,249	6,432	6,309	7,124	7,571			66,166

인원구분	총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원내역	276	17	23	20	24	24	24	24	24	24	24	24	24
인간역	100	7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비인간역	64	5	7	7	7	7	7	7	7	7	7	7	7
총계	242	9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인원내역	14												
인간역	14												
비인간역	14												
총계	14												
인원내역	313	17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인간역	206	7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비인간역	44	5	7	7	7	7	7	7	7	7	7	7	7
총계	271	6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인원내역	14												
인간역	14												
비인간역	14												
총계	14												



2015. 12. 29

1. 概況		2. 調査内容		3. 調査結果		4. 備考	
項目	内容	項目	内容	項目	内容	項目	内容
1	調査対象	1	調査日時	1	調査場所	1	調査者
2	調査目的	2	調査方法	2	調査結果	2	調査結果
3	調査対象	3	調査結果	3	調査結果	3	調査結果
4	調査対象	4	調査結果	4	調査結果	4	調査結果
5	調査対象	5	調査結果	5	調査結果	5	調査結果
6	調査対象	6	調査結果	6	調査結果	6	調査結果
7	調査対象	7	調査結果	7	調査結果	7	調査結果
8	調査対象	8	調査結果	8	調査結果	8	調査結果
9	調査対象	9	調査結果	9	調査結果	9	調査結果
10	調査対象	10	調査結果	10	調査結果	10	調査結果
11	調査対象	11	調査結果	11	調査結果	11	調査結果
12	調査対象	12	調査結果	12	調査結果	12	調査結果
13	調査対象	13	調査結果	13	調査結果	13	調査結果
14	調査対象	14	調査結果	14	調査結果	14	調査結果
15	調査対象	15	調査結果	15	調査結果	15	調査結果
16	調査対象	16	調査結果	16	調査結果	16	調査結果
17	調査対象	17	調査結果	17	調査結果	17	調査結果
18	調査対象	18	調査結果	18	調査結果	18	調査結果
19	調査対象	19	調査結果	19	調査結果	19	調査結果
20	調査対象	20	調査結果	20	調査結果	20	調査結果

1. 概況		2. 調査内容		3. 調査結果		4. 備考	
項目	内容	項目	内容	項目	内容	項目	内容
1	調査対象	1	調査日時	1	調査場所	1	調査者
2	調査目的	2	調査方法	2	調査結果	2	調査結果
3	調査対象	3	調査結果	3	調査結果	3	調査結果
4	調査対象	4	調査結果	4	調査結果	4	調査結果
5	調査対象	5	調査結果	5	調査結果	5	調査結果
6	調査対象	6	調査結果	6	調査結果	6	調査結果
7	調査対象	7	調査結果	7	調査結果	7	調査結果
8	調査対象	8	調査結果	8	調査結果	8	調査結果
9	調査対象	9	調査結果	9	調査結果	9	調査結果
10	調査対象	10	調査結果	10	調査結果	10	調査結果
11	調査対象	11	調査結果	11	調査結果	11	調査結果
12	調査対象	12	調査結果	12	調査結果	12	調査結果
13	調査対象	13	調査結果	13	調査結果	13	調査結果
14	調査対象	14	調査結果	14	調査結果	14	調査結果
15	調査対象	15	調査結果	15	調査結果	15	調査結果
16	調査対象	16	調査結果	16	調査結果	16	調査結果
17	調査対象	17	調査結果	17	調査結果	17	調査結果
18	調査対象	18	調査結果	18	調査結果	18	調査結果
19	調査対象	19	調査結果	19	調査結果	19	調査結果
20	調査対象	20	調査結果	20	調査結果	20	調査結果

구분	구분명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고			
일반회계	일반회계	인건비	19.2	1.95	0.54	0.30	0.14	0.24	0.24	0.06	0.24	0.24	0.24	0.24	0.24	0.24	0.24	0.24	0.24	0.24	0.24	0.24		
		사무실행비	0.44	1.08	0.05	0.00	0.05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사무실행비	0.27	0.29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사무실행비	0.27	0.79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0.27	
		사무실행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무실행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무실행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무실행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무실행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무실행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특별회계	특별회계	인건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무실행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무실행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무실행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무실행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무실행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무실행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무실행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무실행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무실행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表 10000-1 設計圖樣說明書

圖名	設計圖樣說明書
圖號	10000-1
設計者	XXX
校核者	XXX
日期	2023.10.27
比例	1:1
圖紙規格	A3
繪圖比例	1:1
繪圖日期	2023.10.27
繪圖地點	XXX
繪圖單位	XXX
繪圖人員	XXX
繪圖設備	XXX
繪圖材料	XXX
繪圖環境	XXX
繪圖說明	XXX

表 10000-2 設計圖樣說明書

圖名	設計圖樣說明書
圖號	10000-2
設計者	XXX
校核者	XXX
日期	2023.10.27
比例	1:1
圖紙規格	A3
繪圖比例	1:1
繪圖日期	2023.10.27
繪圖地點	XXX
繪圖單位	XXX
繪圖人員	XXX
繪圖設備	XXX
繪圖材料	XXX
繪圖環境	XXX
繪圖說明	XXX

表 10000-3 設計圖樣說明書

圖名	設計圖樣說明書
圖號	10000-3
設計者	XXX
校核者	XXX
日期	2023.10.27
比例	1:1
圖紙規格	A3
繪圖比例	1:1
繪圖日期	2023.10.27
繪圖地點	XXX
繪圖單位	XXX
繪圖人員	XXX
繪圖設備	XXX
繪圖材料	XXX
繪圖環境	XXX
繪圖說明	XXX

表 10000-4 設計圖樣說明書

圖名	設計圖樣說明書
圖號	10000-4
設計者	XXX
校核者	XXX
日期	2023.10.27
比例	1:1
圖紙規格	A3
繪圖比例	1:1
繪圖日期	2023.10.27
繪圖地點	XXX
繪圖單位	XXX
繪圖人員	XXX
繪圖設備	XXX
繪圖材料	XXX
繪圖環境	XXX
繪圖說明	XXX

2 서울특별시 상환세액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액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지방채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지방채상환액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민수채상환액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방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방채상환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민수채상환액(2004년 기준) 100%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함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방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방채상환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용보증서 산출내역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계좌입금	35,337															
상환금	35,337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신원보증금	1,443,847	22,019	21,547	21,075	20,603	20,131	19,659	19,187	18,715	18,243	17,771	17,299	16,827	16,355	15,883	15,411
회계이익	25,581	507	339	305	274	243	212	181	150	120	90	60	30	0	0	0
합계신원보증금	40,985	539	478	474	474	474	474	474	474	474	474	474	474	474	474	474

계좌입금	35,337
상환금	35,337
신원보증금	1,443,847
계좌이익	25,581
합계신원보증금	1,484,004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좌입금	35,337															
상환금	35,337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472	
신원보증금	1,443,847	22,019	21,547	21,075	20,603	20,131	19,659	19,187	18,715	18,243	17,771	17,299	16,827	16,355	15,883	
회계이익	25,581	507	339	305	274	243	212	181	150	120	90	60	30	0	0	
합계신원보증금	40,985	539	478	474	474	474	474	474	474	474	474	474	474	474	474	

신용보증 상환내역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41인역	35,337	407	587	731	510	794	73	377	317	777	397
총합계	35,337	407	587	731	510	794	73	377	317	777	397
상환후 금액	1,642,867	5,483	7,794	6,102	2,663	5,693	4,961	4,202	3,499	3,158	397
기금예산	35,581	709	127	176	95	81	62	57	54	32	5
외국인상환금액	40,916	526	874	803	924	817	806	834	521	309	794

41인역	35,337
상환후 금액	35,337
상환후 금액	411,000
예산외액	25,481
외국인상환금액	66,916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41인역	35,337	407	587	731	510	794	73	377	317	777	397
총합계	35,337	407	587	731	510	794	73	377	317	777	397
상환후 금액	1,642,867	5,483	7,794	6,102	2,663	5,693	4,961	4,202	3,499	3,158	397
기금예산	35,581	709	127	176	95	81	62	57	54	32	5
외국인상환금액	40,916	526	874	803	924	817	806	834	521	309	794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4년 1월 1일 기준의 2025년 말까지의 연도별 추산치

단위: 백만원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4년 1월 1일 기준의 2025년 말까지의 연도별 추산치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4년 1월 1일 기준의 2025년 말까지의 연도별 추산치

DATE	TIME	TYPE	LOCATION	STATUS	REMARKS
10/11	10:00	ARR	101	OK	
10/11	10:05	ARR	102	OK	
10/11	10:10	ARR	103	OK	
10/11	10:15	ARR	104	OK	
10/11	10:20	ARR	105	OK	
10/11	10:25	ARR	106	OK	
10/11	10:30	ARR	107	OK	
10/11	10:35	ARR	108	OK	
10/11	10:40	ARR	109	OK	
10/11	10:45	ARR	110	OK	
10/11	10:50	ARR	111	OK	
10/11	10:55	ARR	112	OK	
10/11	11:00	ARR	113	OK	
10/11	11:05	ARR	114	OK	
10/11	11:10	ARR	115	OK	
10/11	11:15	ARR	116	OK	
10/11	11:20	ARR	117	OK	
10/11	11:25	ARR	118	OK	
10/11	11:30	ARR	119	OK	
10/11	11:35	ARR	120	OK	
10/11	11:40	ARR	121	OK	
10/11	11:45	ARR	122	OK	
10/11	11:50	ARR	123	OK	
10/11	11:55	ARR	124	OK	
10/11	12:00	ARR	125	OK	
10/11	12:05	ARR	126	OK	
10/11	12:10	ARR	127	OK	
10/11	12:15	ARR	128	OK	
10/11	12:20	ARR	129	OK	
10/11	12:25	ARR	130	OK	
10/11	12:30	ARR	131	OK	
10/11	12:35	ARR	132	OK	
10/11	12:40	ARR	133	OK	
10/11	12:45	ARR	134	OK	
10/11	12:50	ARR	135	OK	
10/11	12:55	ARR	136	OK	
10/11	13:00	ARR	137	OK	
10/11	13:05	ARR	138	OK	
10/11	13:10	ARR	139	OK	
10/11	13:15	ARR	140	OK	
10/11	13:20	ARR	141	OK	
10/11	13:25	ARR	142	OK	
10/11	13:30	ARR	143	OK	
10/11	13:35	ARR	144	OK	
10/11	13:40	ARR	145	OK	
10/11	13:45	ARR	146	OK	
10/11	13:50	ARR	147	OK	
10/11	13:55	ARR	148	OK	
10/11	14:00	ARR	149	OK	
10/11	14:05	ARR	150	OK	
10/11	14:10	ARR	151	OK	
10/11	14:15	ARR	152	OK	
10/11	14:20	ARR	153	OK	
10/11	14:25	ARR	154	OK	
10/11	14:30	ARR	155	OK	
10/11	14:35	ARR	156	OK	
10/11	14:40	ARR	157	OK	
10/11	14:45	ARR	158	OK	
10/11	14:50	ARR	159	OK	
10/11	14:55	ARR	160	OK	
10/11	15:00	ARR	161	OK	
10/11	15:05	ARR	162	OK	
10/11	15:10	ARR	163	OK	
10/11	15:15	ARR	164	OK	
10/11	15:20	ARR	165	OK	
10/11	15:25	ARR	166	OK	
10/11	15:30	ARR	167	OK	
10/11	15:35	ARR	168	OK	
10/11	15:40	ARR	169	OK	
10/11	15:45	ARR	170	OK	
10/11	15:50	ARR	171	OK	
10/11	15:55	ARR	172	OK	
10/11	16:00	ARR	173	OK	
10/11	16:05	ARR	174	OK	
10/11	16:10	ARR	175	OK	
10/11	16:15	ARR	176	OK	
10/11	16:20	ARR	177	OK	
10/11	16:25	ARR	178	OK	
10/11	16:30	ARR	179	OK	
10/11	16:35	ARR	180	OK	
10/11	16:40	ARR	181	OK	
10/11	16:45	ARR	182	OK	
10/11	16:50	ARR	183	OK	
10/11	16:55	ARR	184	OK	
10/11	17:00	ARR	185	OK	
10/11	17:05	ARR	186	OK	
10/11	17:10	ARR	187	OK	
10/11	17:15	ARR	188	OK	
10/11	17:20	ARR	189	OK	
10/11	17:25	ARR	190	OK	
10/11	17:30	ARR	191	OK	
10/11	17:35	ARR	192	OK	
10/11	17:40	ARR	193	OK	
10/11	17:45	ARR	194	OK	
10/11	17:50	ARR	195	OK	
10/11	17:55	ARR	196	OK	
10/11	18:00	ARR	197	OK	
10/11	18:05	ARR	198	OK	
10/11	18:10	ARR	199	OK	
10/11	18:15	ARR	200	OK	
10/11	18:20	ARR	201	OK	
10/11	18:25	ARR	202	OK	
10/11	18:30	ARR	203	OK	
10/11	18:35	ARR	204	OK	
10/11	18:40	ARR	205	OK	
10/11	18:45	ARR	206	OK	
10/11	18:50	ARR	207	OK	
10/11	18:55	ARR	208	OK	
10/11	19:00	ARR	209	OK	
10/11	19:05	ARR	210	OK	
10/11	19:10	ARR	211	OK	
10/11	19:15	ARR	212	OK	
10/11	19:20	ARR	213	OK	
10/11	19:25	ARR	214	OK	
10/11	19:30	ARR	215	OK	
10/11	19:35	ARR	216	OK	
10/11	19:40	ARR	217	OK	
10/11	19:45	ARR	218	OK	
10/11	19:50	ARR	219	OK	
10/11	19:55	ARR	220	OK	
10/11	20:00	ARR	221	OK	
10/11	20:05	ARR	222	OK	
10/11	20:10	ARR	223	OK	
10/11	20:15	ARR	224	OK	
10/11	20:20	ARR	225	OK	
10/11	20:25	ARR	226	OK	
10/11	20:30	ARR	227	OK	
10/11	20:35	ARR	228	OK	
10/11	20:40	ARR	229	OK	
10/11	20:45	ARR	230	OK	
10/11	20:50	ARR	231	OK	
10/11	20:55	ARR	232	OK	
10/11	21:00	ARR	233	OK	
10/11	21:05	ARR	234	OK	
10/11	21:10	ARR	235	OK	
10/11	21:15	ARR	236	OK	
10/11	21:20	ARR	237	OK	
10/11	21:25	ARR	238	OK	
10/11	21:30	ARR	239	OK	
10/11	21:35	ARR	240	OK	
10/11	21:40	ARR	241	OK	
10/11	21:45	ARR	242	OK	
10/11	21:50	ARR	243	OK	
10/11	21:55	ARR	244	OK	
10/11	22:00	ARR	245	OK	
10/11	22:05	ARR	246	OK	
10/11	22:10	ARR	247	OK	
10/11	22:15	ARR	248	OK	
10/11	22:20	ARR	249	OK	
10/11	22:25	ARR	250	OK	
10/11	22:30	ARR	251	OK	
10/11	22:35	ARR	252	OK	
10/11	22:40	ARR	253	OK	
10/11	22:45	ARR	254	OK	
10/11	22:50	ARR	255	OK	
10/11	22:55	ARR	256	OK	
10/11	23:00	ARR	257	OK	
10/11	23:05	ARR	258	OK	
10/11	23:10	ARR	259	OK	
10/11	23:15	ARR	260	OK	
10/11	23:20	ARR	261	OK	
10/11	23:25	ARR	262	OK	
10/11	23:30	ARR	263	OK	
10/11	23:35	ARR	264	OK	
10/11	23:40	ARR	265	OK	
10/11	23:45	ARR	266	OK	
10/11	23:50	ARR	267	OK	
10/11	23:55	ARR	268	OK	
10/11	00:00	ARR	269	OK	
10/11	00:05	ARR	270	OK	
10/11	00:10	ARR	271	OK	
10/11	00:15	ARR	272	OK	
10/11	00:20	ARR	273	OK	
10/11	00:25	ARR	274	OK	
10/11	00:30	ARR	275	OK	
10/11	00:35	ARR	276	OK	
10/11	00:40	ARR	277	OK	
10/11	00:45	ARR	278	OK	
10/11	00:50	ARR	279	OK	
10/11	00:55	ARR	280	OK	
10/11	01:00	ARR	281	OK	
10/11	01:05	ARR	282	OK	
10/11	01:10	ARR	283	OK	
10/11	01:15	ARR	284	OK	
10/11	01:20	ARR	285	OK	
10/11	01:25	ARR	286	OK	
10/11	01:30	ARR	287	OK	
10/11	01:35	ARR	288	OK	
10/11	01:40	ARR	289	OK	
10/11	01:45	ARR	290	OK	
10/11	01:50	ARR	291	OK	
10/11	01:55	ARR	292	OK	
10/11	02:00	ARR	293	OK	
10/11	02:05	ARR	294	OK	
10/11	02:10	ARR	295	OK	
10/11	02:15	ARR	296	OK	
10/11	02:20	ARR	297	OK	
10/11	02:25	ARR	298	OK	
10/11	02:30	ARR	299	OK	
10/11	02:35	ARR	300	OK	
10/11	02:40	ARR	301	OK	
10/11	02:45	ARR	302	OK	
10/11	02:50	ARR	303	OK	
10/11	02:55	ARR	304	OK	
10/11	03:00	ARR	305	OK	
10/11	03:05	ARR	306	OK	
10/11	03:10	ARR	307	OK	
10/11	03:15	ARR	308	OK	
10/11	03:20	ARR	309	OK	
10/11	03:25	ARR	310	OK	
10/11	03:30	ARR	311	OK	
10/11	03:35	ARR	312	OK	
10/11	03:40	ARR	313	OK	
10/11	03:45	ARR	314	OK	
10/11	03:50	ARR	315	OK	
10/11	03:55	ARR	316	OK	
10/11	04:00	ARR	317	OK	
10/11	04:05	ARR	318	OK	
10/11	04:10	ARR	319	OK	
10/11	04:15	ARR	320	OK	
10/11	04:20	ARR	321	OK	
10/11	04:25	ARR	322	OK	
10/11	04:30	ARR	323	OK	
10/11	04:35	ARR	324	OK	
10/11	04:40	ARR	325	OK	
10/11	04:45	ARR	326	OK	
10/11	04:50	ARR	327	OK	
10/11	04:55	ARR	328	OK	
10/11	05:00	ARR	329	OK	
10/11	05:05	ARR	330	OK	
10/11	05:10	ARR	331	OK	
10/11	05:15	ARR	332	OK	
10/11	05:20	ARR	333	OK	
10/11	05:25	ARR	334	OK	
10/11	05:30	ARR	335	OK	
10/11	05:35	ARR	336	OK	
10/11	05:40	ARR	337	OK	
10/11	05:45	ARR	338	OK	
10/11	05:50	ARR	339	OK	
10/11	05:55	ARR	340	OK	
10/11	06:00	ARR	341	OK	
10/11	06:05	ARR	342	OK	
10/11	06:10	ARR	343	OK	
10/11	06:15	ARR	344	OK	
10/11	06:20	ARR	345	OK	
10/11	06:25	ARR	346	OK	
10/11	06:30	ARR	347	OK	
10/11	06:35	ARR	348	OK	
10/11	06:40	ARR	349	OK	
10/					

DATE	TIME	LOCATION	ACTIVITY	PERSONNEL	REMARKS
1990-01-01	08:00
1990-01-02	08:00
1990-01-03	08:00
1990-01-04	08:00
1990-01-05	08:00
1990-01-06	08:00
1990-01-07	08:00
1990-01-08	08:00
1990-01-09	08:00
1990-01-10	08:00
1990-01-11	08:00
1990-01-12	08:00
1990-01-13	08:00
1990-01-14	08:00
1990-01-15	08:00
1990-01-16	08:00
1990-01-17	08:00
1990-01-18	08:00
1990-01-19	08:00
1990-01-20	08:00
1990-01-21	08:00
1990-01-22	08:00
1990-01-23	08:00
1990-01-24	08:00
1990-01-25	08:00
1990-01-26	08:00
1990-01-27	08:00
1990-01-28	08:00
1990-01-29	08:00
1990-01-30	08:00
1990-01-31	08:00
1990-02-01	08:00
1990-02-02	08:00
1990-02-03	08:00
1990-02-04	08:00
1990-02-05	08:00
1990-02-06	08:00
1990-02-07	08:00
1990-02-08	08:00
1990-02-09	08:00
1990-02-10	08:00
1990-02-11	08:00
1990-02-12	08:00
1990-02-13	08:00
1990-02-14	08:00
1990-02-15	08:00
1990-02-16	08:00
1990-02-17	08:00
1990-02-18	08:00
1990-02-19	08:00
1990-02-20	08:00
1990-02-21	08:00
1990-02-22	08:00
1990-02-23	08:00
1990-02-24	08:00
1990-02-25	08:00
1990-02-26	08:00
1990-02-27	08:00
1990-02-28	08:00
1990-02-29	08:00

UNIT 8: 1990-2000

资产	年初余额	年末余额	负债	年初余额	年末余额
流动资产			流动负债		
货币资金	100,000.00	100,000.00	短期借款		
应收账款	200,000.00	200,000.00	应付账款	100,000.00	100,000.00
预付账款	100,000.00	100,000.00	预收账款		
其他应收款	50,000.00	50,000.00	应付职工薪酬	50,000.00	50,000.00
存货	150,000.00	150,000.00	应交税费	20,000.00	20,000.00
流动资产合计	600,000.00	600,000.00	非流动负债		
非流动资产			长期借款		
固定资产	300,000.00	300,000.00	应付债券		
无形资产	100,000.00	100,000.00	其他非流动负债		
其他非流动资产	50,000.00	50,000.00	非流动负债合计		
非流动资产合计	450,000.00	450,000.00	所有者权益		
资产总计	1,050,000.00	1,050,000.00	实收资本	500,000.00	500,000.00
			资本公积	100,000.00	100,000.00
			盈余公积	100,000.00	100,000.00
			未分配利润	350,000.00	350,000.00
			所有者权益合计	1,050,000.00	1,050,000.00
			负债和所有者权益总计	1,050,000.00	1,050,000.00

资产	年初余额	年末余额	负债	年初余额	年末余额
流动资产			流动负债		
货币资金	100,000.00	100,000.00	短期借款		
应收账款	200,000.00	200,000.00	应付账款	100,000.00	100,000.00
预付账款	100,000.00	100,000.00	预收账款		
其他应收款	50,000.00	50,000.00	应付职工薪酬	50,000.00	50,000.00
存货	150,000.00	150,000.00	应交税费	20,000.00	20,000.00
流动资产合计	600,000.00	600,000.00	非流动负债		
非流动资产			长期借款		
固定资产	300,000.00	300,000.00	应付债券		
无形资产	100,000.00	100,000.00	其他非流动负债		
其他非流动资产	50,000.00	50,000.00	非流动负债合计		
非流动资产合计	450,000.00	450,000.00	所有者权益		
资产总计	1,050,000.00	1,050,000.00	实收资本	500,000.00	500,000.00
			资本公积	100,000.00	100,000.00
			盈余公积	100,000.00	100,000.00
			未分配利润	350,000.00	350,000.00
			所有者权益合计	1,050,000.00	1,050,000.00
			负债和所有者权益总计	1,050,000.00	1,050,000.00

표 1. 2000년도 예산 편성현황(단위: 백만원)

구분	1. 인건비	2. 여비	3. 회의비	4. 교육비	5. 연구비	6. 장의비	7. 기타	8. 총계
총계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인건비	1,230							1,230
여비		1,230						1,230
회의비			1,230					1,230
교육비				1,230				1,230
연구비					1,230			1,230
장의비						1,230		1,230
기타							1,230	1,230

표 2. 2000년도 예산 편성현황(단위: 백만원)

구분	1. 인건비	2. 여비	3. 회의비	4. 교육비	5. 연구비	6. 장의비	7. 기타	8. 총계
총계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인건비	1,230							1,230
여비		1,230						1,230
회의비			1,230					1,230
교육비				1,230				1,230
연구비					1,230			1,230
장의비						1,230		1,230
기타							1,230	1,230

